

# 목 차

- 정책 용어 쉽고 바르게 쓰기 ..... 1  
김 형 배\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 ..... 19  
박 중 덕\_국립국어원 강의교수
  
-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 61  
김 의 진\_국어생활연구원 원장, 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 공공 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 83  
이 정 운\_서강대학교 교수
  
- 특강 : 한 수준 높은 공공 언어를 위하여 ..... 95  
박 장 원\_국어문화원연합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표준국어대사전 활용하기 ..... 109  
김 한 샘\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책임관 제도 ..... 121  
최 용 기\_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 공공 기관, 주목받는 정책 이름 정하기 ..... 143  
김 상 톨\_유나이티드브랜드 대표



# 정책 용어 쉽고 바르게 쓰기

김 형 배\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정책 용어 쉽고 바르게 쓰기

김 형 배\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1. 정책 용어 다듬은 사례

### 1.1. 다듬은 사례(1)\_중앙 부처

부 처 명	다듬을 말	원어 표기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절도법면		훔 낚기 비탈면
국토해양부	톨게이트	Toll Gate	영업소, 요금소
국토해양부	크러셔	C/R, Crusher	골재 생산장
국토해양부	로드킬	Road kill	동물 교통사고
국토해양부	웻 리스	Wet lease	포괄 임차
국토해양부	ITS 아키텍처	ITS architecture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성도
국토해양부	다루키	垂木	서까래
국토해양부	컨센서스	Concensus	의견 일치
국토해양부	마인드맵	Mind map	연상법
국토해양부	CCTV	closed circuit TV	폐쇄 회로 텔레비전/ 상황 관찰기
국토해양부	롤모델	Role model	본보기
국토해양부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국토해양부	케이atering	catering	출장 요리
국토해양부	마일리지 서비스	mileage service	이용 실적 서비스
국토해양부	수로도서지	水路圖書紙	해도 및 항해 서지
국토해양부	VTS	vessel traffic system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국토해양부	틸팅열차	tilting-	준고속열차
국토해양부	사이버 인프라 구축	cyber infra ~	전자 정보 공유 기반 시설 구축

부 처 명	다듬은 말	원어 표기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잔여지	殘餘地	자투리 땅
국토해양부	F.O.D.	Foreign Object Damage	항행 위험물
국토해양부	PQ 입찰	Pre-Qualification ~	사전 심사 입찰
국토해양부	건설 Cals	~ 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 정보 공유 시스템
국토해양부	제내지	堤內地	제방 밖
국토해양부	BSC		균형 성과 표
국토해양부	보링	boring	시추
국토해양부	코드 쉐어	Code share	공동 편명
국토해양부	편경사	扁傾斜	횡단 기울기
국토해양부	도류화		곡선화
국토해양부	IC	Interchange	나들목
국토해양부	페이스매핑	Face mapping	사면 전개도
국토해양부	드라이 리스	Dry lease	단순 임차
국토해양부	C.O.P.	Community of Practice	학습 연구 동아리
국토해양부	브릿지	Bridge	탐승교
국토해양부	R&D 사업	Research& Development ~	연구 개발 사업
국토해양부	차터	Charter	전세편 항공기
국토해양부	오픈스카이	Open skies	항공 자유화
국토해양부	로드 팩터	Load factor	탑승률
국토해양부	VMS	Variable Message Sign	도로 전광 표지
국토해양부	VE	value engineering	가치 제고 기술
국토해양부	나라시	均し	고르기
국토해양부	다이크	Dike	배수턱
국토해양부	성토법면		흙 쌓기 비탈면
국토해양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체계
국토해양부	매뉴얼	Manual	지침서
국토해양부	사인보드	Sign Board	안전 유도판
국토해양부	위빙	Weaving	엇갈림
국토해양부	배칭플랜트	B/P, Batching plant	콘크리트 생산장
국토해양부	SOC사업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기반 시설 사업
국토해양부	TCS	Toll Collecting Systems	통행료 수납 장치
국토해양부	빠레카	Breaker	파쇄기

부처명	다듬은 말	원어 표기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기술
국토해양부	유도펜스	~ Fence	유도 울타리
국토해양부	구배	勾配	기울기
국토해양부	딜리니에이터	Delineator	시선 유도 표지
국토해양부	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안전도 평가
국토해양부	단도리	段取り	준비
국토해양부	루베	立方米(るべ)	세제곱미터
국토해양부	헤베	平方米	제곱미터
국토해양부	반센/반생	盤線	콘 철사, 연철사
국토해양부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국토해양부	리콜	Recall	제작 결함 시정/결함보상(제)
국토해양부	바리케이드	barricade	차단 시설물
국토해양부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국토해양부	ABS	Anti-lock Brake System	바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국토해양부	가드레일	guardrail	방호 울타리
국토해양부	명예연안관리인제도		연안 지킴이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	Escrow制	결제 대금 예치제
공정거래위원회	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현충선양 프로그램		나라 사랑 참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케어 플랜		간호 복지 계획/복지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 행정, 관리, 통치
문화체육관광부	U-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뮤지엄 콤플렉스		국립박물관 복합 단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CT		녹색 방송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드 컴퓨팅		컴퓨터 연계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기반 IT(정보 통신)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환경부	어독성		어류 독성
환경부	그린인프라		녹색 기반 시설
환경부	포기(조)		공기 공급(조)
환경부	비산먼지		날림 먼지

## 1.2. 다듬은 사례(2)\_총청복도(1차)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랜드마크	마루지	25	오프닝	개막(공연)
2	러브투어	~ 사랑방문	26	워크숍	수련회/연수회
3	로드맵	밈그림/청사진/길잡이 / 단계별 이행안	27	원스톱	바로/한번에/한자리
4	리모델링	구조 변경/새단장	28	웰빙	참살이
5	매칭펀드	대응 자금/대응 기금	29	이벤트	행사/사건
6	메세나	문예 후원	30	인랜드포트	내륙항
7	모니터	정보 검색/감시/관찰/ 점검	31	인센티브	유인책/특전
8	바우처	복지 교환권/ 복지 상품권	32	인프라	기반(시설)/바탕
9	바이오 메디컬 허브	생명 의약 중심(지)	33	제로베이스	원점
10	뱅크	은행	34	콘텐츠	내용(물)/꾸림정보
11	벤치마킹	견주기/따라잡기	35	큐시트	진행표
12	벨트	지대/구역/띠	36	클러스터	연합(지구)
13	브랜드	상표/명품	37	클로징	마무리/맺음
14	비전	이상/전망	38	타깃마케팅	주요 판촉/중점 판촉
15	서비스	봉사/접대/도움	39	태스크포스	전략팀/기획팀/특별팀
16	서포터스	후원자/지지자/응원단 / 뒷바라지꾼	40	테마	주제
17	세미나	발표회/연구회/토론회	41	테크노폴리스	첨단 산업 연구 도시
18	센터	본부/중앙/중심(지)	42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
19	슬로건	표어/강령/구호	43	패러다임	틀/체계
20	시그널	신호	44	패밀리	가족
21	시니어클럽	어르신 모임/ 어르신 동아리	45	펠릿	{연료/비료/먹이}덩이
22	아이디어챌린지	아이디어 겨루기/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한 생각 공모전	46	포럼	토론회/연구회
23	어젠다	의제	47	프로그램	계획표/차레
24	어메니티	쾌적함	48	프로젝트	연구(과제)/일감/사업



### 1.3. 다듬은 사례(3)\_총칭복도(2차)

연번	다듬은 말	예 문	다듬은 말
1	글로벌	미래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적)/세계(적)
2	네트워크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망/연계망/연락망
3	노에러 노다운	노에러 노다운(no error no down) 상황관리체제 유지	완벽한
4	뉴타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어촌뉴타운 조성	새마을
5	로열티	품종보호권 시행으로 로열티 지불부담증가	사용료
6	리더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리더 양성	지도자
7	리스크	대형 건설공사 리스크 예방감사	위험[요인/요소]
8	마인드	적극적 홍보마인드 제고	의식
9	매뉴얼	방화관리 업무매뉴얼 / 농기계 사용매뉴얼	지침/편람/안내서
10	매니저	취업설계사 및 직업교육매니저 운영 / 성과관리 프로그램매니저	지도사/관리자/운영자
11	메시지	경보발령 시 문자메시지 즉시 전송	알림(말)
12	모니터	문화현장 모니터	살필이
13	백드롭	지방기자실 백드롭	배경막
14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
15	서번트 리더십	소방간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섬김 지도력
16	스크랩	전자스크랩으로 녹색도정 실현	자료 모음
17	스토리텔링	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전파	이야기 짓기
18	아이디어챌린지	전 세계 대학생을 위한 아이디어챌린지	창안 공모전
19	오피니언리더	오피니언리더 pool 활용 객관성이 강조된 언론기고 추진	여론 주도층/여론 이끄는
20	온라인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	누리망/전산망
21	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안내서
22	캠페인	자전거이용 캠페인 전개	운동/홍보
23	캠프	전통시장 체험 및 경제캠프 확대	체험 교실
24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중장기 커뮤니케이션 미약	의사소통
25	코너	감사정보 코너 운영 활성화	방/마당
26	클린	청렴물결 확산으로 클린 소방실천	투명한/깨끗한
27	탑프루트	최고 품질과실 생산 탑프루트 사업 추진	으뜸 과실
28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 초청 도내 팸투어	인기 누리(방)지기
29	파트너십	우호 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동반 관계
30	패턴	소비자 패턴변화에 따른 친환경 축산업	유형
31	팸투어	파워블로거 초청 도내 팸투어	(초청) 홍보 여행
32	포스팅	블로그포스팅	올리기
33	테이프 커팅	진행순서: 축사, 테이프커팅 등	색줄 자르기

#### 1.4. 다듬은 사례(4)\_전라남도(1차)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갑지	표지	24	마이스터대학	농업장인대학/ 미래농업대학
2	강도	세기/강도	25	멤버십	회원(제)
3	강제환우	강제 털갈이	26	멘토링	후원, 상담, 지도
4	개구기	입벌리개	27	모객비	관광객 모집 비용
5	개수	수리/고치기	28	모니터링	살피기/감시/관찰
6	거세창	불칸 상처/거세 상처	29	벌개제근	나무뿌리 파내기/ 나무뿌리 제거
7	건고추	말린 고추/마른 고추	30	법면보호	비탈면 보호
8	경도	굳기/굳음새	31	벤더	중간 유통업자
9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농업 재활용 사업소/ 농업 재활용 센터	32	보파	보충 파종/ 덧뿌리기/덧뿌림
10	계두	닭마마	33	봉독	벌독
11	고장	엉덩이 길이	34	봉상관창	막대관창
12	관행농법	전통 농법/관행 농법	35	부화	알깨기/부화
13	구조내력	구조 내구력/ 구조 견딜힘	36	분말염료	가루물감
14	그린전남	녹색 전남	37	브랜드육	상표(등록)고기
15	난소	알집/난소	38	블루 콘텐츠	해양 {문화 자원/꾸림 정보}
16	내구연한	사용 연한	39	비종	비료(의) 종류
17	노후시설	낡은시설	40	비즈니스센터	사업소/사업처
18	논슬립	미끄럼 방지 {물/ 시설}	41	사 료	생각
19	농후사료	고영양 사료	42	사료작물	먹이 작물/사료 작물
20	레지던스	창작 공간/창작촌	43	산유	젓내기
21	로더	적재기	44	생력화	노동력 절감/ 노동력 줄이기
22	로드맵	일정(표), 밑그림, 청사진, 길잡이, 이행안	45	선도농가	앞선농가/선도농가
23	로컬푸드	{지역/향토} 먹을거리	46	선택사양	선택 항목/선택 품목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47	성돈	다 큰 돼지/어미 돼지	70	제조작업	김매기/풀뽑기/제조작업
48	송출	(내)보내기	71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새독감
49	승상	높임/돋우기/돋움/높이기	72	종구소독	씨알소독
50	시니어클럽	어르신 모임/어르신 동아리	73	지위	지위/자리
51	아이디어 페스티벌	생각 모음 잔치/ 아이디어 발표 대회	74	채양구	햇빛 가리개/그늘막
52	아이티(IT)	정보 기술	75	채종포	씨받이밭
53	야생조수	야생{짐승/동물/조수}	76	출타	외출
54	어메니티	쾌적함	77	컨베이어	운반(기)
55	어젠다	의제	78	컨퍼런스	회의
56	예찰검사	사전 검사	79	토양검정	토양 검사
57	오션복합 콤플렉스	해양 복합 단지	80	통로암거	통행굴
58	우결핵	소결핵	81	투어렐리	관광지 돌아보기 대회/ 관광지 순회 대회
59	유기농멤버스십	유기농 회원(제)	82	패키지상품	꾸러미 상품/묶음 상품
60	윤환방목	옮겨 먹이기/돌림 방목	83	팸투어	사전 답사 여행/ (초청) 홍보 여행
61	의료텔레메트리	(원격) 화상 처치 체제	84	펠릿사료	덩이 먹이/압축 사료
62	익빈대	암틀	85	펠릿보일러	압축 연료 보일러
63	익년도	다음 해/이듬해	86	포토존	사진 촬영 구역
6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관리자	87	표준 프로세스 (SP)	표준 {과정/절차}
65	전작	밭농사	88	프랜차이즈	상품 제휴 본점
66	전작물	밭작물	89	휴간관개	고랑 물대기
67	제당	득	90	PB상품	자체 상표 상품
68	제대	땃줄	91	SS기	농약 살포기
69	제연 경계벽	연기 차단벽			

### 1.5. 다듬은 사례(5)\_특허심판원 심결문

연번	다듬을 말	예 문	다듬은 말
1	개시된	카타로그에 개시된 신발은 명백히 일반적인 운동화로 인식되어 골프화가 아니며	드러내 보인
2	당업자	당업자 및 일반수요자의 유류제품의 관심의 수준이 매우 높은 점 등의 구체적인 실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자
3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MAX'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관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알맞다
4	형해화될	이로 인해 강행규정인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유명무실해질
5	가사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바이오 저장실, 생물숙성 저장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설사
6	설시	이 건 심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자세한 설명
7	관련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비유사하고 경제적 관련성도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성/연관성
8	화체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내재된/들어 있는
9	일응	애초에 청구인이 의도한 상표와는 동일성이 상실할 것이라는 점이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단
10	요부	1 요부에 해당하는 "간바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1 요부인 "간바지"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고	중요한 부분
11	상이한	이 건 발명의 '에어 자켓(30)'은 인용발명의 '공기구(11)'와 전혀 상이한 구성이다.	(서로) 다른
12	적의	음원 재생의 배속 모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의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게/적절히
13	정정개소	정정개소는 아래와 같다.	고친 곳
14	시건	인용발명 2의 전자잠금장치는 단지 부동산의 출입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전자키로서 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잠금
15	실효적으로	본딩와이어(6)의 높이를 실효적으로 낮추어 반도체 장치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효 있게
16	안치대	하수관(P1,P2)이 연결된 맨홀(10)에서 분리된 퇴적물 수거하도록 안치대(12a)와 가이드(12b)가 구비된 맨홀바닥면(12)에 설치되는 퇴적물수거함(20)	보관대

연번	다듬을 말	예 문	다듬은 말
17	유부	이 사건 출원상표 중의 “Est. 1987”은 출원인 회사의 설립연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거나 부기적인 부분이어서 상표의 유부 판단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유사 여부/ 비슷한지 아닌지
18	일의적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일의적으로 해석한다 하여도	뜻이 같은
19	성막된	상기 배선 형성 영역을 향하는 상기 बैं크의 측면 전체를 따라 성막된 제 1 막과, 그 제 1 막 위에 적층하여 성막된 제 2 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막이 형성된
20	교호로	음극주와 결합되는 음극판, 분리막 및 양극주와 결합되는 양극판이 교호로 적층되는 극판군과 전해질 용액	변갈아/교대로/ 어긋나게
21	대향하도록	인용발명 1에서도 선광원(3)이 광입사단면(4c)에 대향하도록 도광판(4)의 이면측에 배치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마주 보도록
22	배소	상기 Na <sub>2</sub> CO <sub>3</sub> 및 NaCl이 혼합된 폐촉매를 배소장치에 투입하여, 하기 배소 단계를 거쳐, 유가금속의 산화염을 생성시키는 단계	가열

## 1.6. 다듬은 사례(6)\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용어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정 의
추락	떨어짐	① 사람이 건물, 나무,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짐 ② 하수관, 구멍 등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짐
전도·전복	넘어짐	① 사람이 미끄러운 곳이나 비탈진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구름 ② 사람이 걸어가다가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헛딛음 ③ 물건이 넘어짐
붕괴·도괴	무너짐	① 건물, 흙더미 또는 실어 놓은 물건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림 ② 시설물, 물체 등의 일부분이 꺾어져 무너짐
충돌·접촉	부딪침	① 자신의 몸놀림으로 어떤 물건과 부딪침 ② 물건이 몸체에 붙은 채로 움직여 사람에게 와 부딪치거나 닿음 ※ 차량 등이 충돌하여 운전석에서 다쳤을 때는 교통사고로 분류 ③ 물건을 나르거나 공구를 다루다가 이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음
낙하·비래	날아옴	① 자신이 직접 다루지 않은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날아옴 ② 기계, 공구 등의 일부 또는 작업물의 일부나 전체가 떨어져 날아오거나 솟구쳐 뿜어 나옴
협착·감김 (압박 포함)	끼임	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물체 사이에 끼임, 물림, 말림 또는 감김 ② 움직이는 물체의 위나 옆에서 함께 움직이다가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다른 물체와 끼임
압박·진동	진동	잠깐 또는 오랫동안 진동에 노출됨
신체 반작용	잘못된 자세	잠깐 동안의 갑작스럽거나 균형을 잃은 몸놀림으로 인한 반사적인 움직임,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부자연스런 자세	불편한 자세	시설물 등의 부적절한 설계나 배치로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여 신체에 부담을 줌
과도한 힘·동작	무리한 동작	물건을 다룰 때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힘을 씌(밀기, 당기기, 버티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옮기기 등)
반복적 동작	반복 동작	계속 또는 되풀이하는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을 줌
이상 온도 노출·접촉	비정상 온도	꽤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됨
이상 기압 노출	기압 변화	급격한 기압 변화로 신체에 무리를 줌
소음 노출	소음	잠깐 또는 오랫동안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됨 (폭발음 제외)
유해·위험 물질 노출·접촉	유해 물질	①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액체, 가스 등)에 노출되거나 그것을 마심 ② 독이 있는 동물에 쏘이거나 물림
유해 광선 노출	유해 광선	해로운 방사선에 노출됨
산소 결핍·질식	산소 부족	산소가 모자란 환경에 드러내거나 다른 물질이 숨길을 막아 숨쉬기가 어려움
전류 접촉	감전	전기가 흐르는 물체나 전기 불꽃에 몸이 닿거나 몸에 전류가 흘러 화상, 근육 수축, 숨쉬기 곤란, 심장 마비 등이 나타남

## 2. 우리말 다듬기

### 2.1. 우리말 다듬기의 원칙

- ①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②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③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④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국어 순화’라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한다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 마디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말 다듬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다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알맞게’ 바로잡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가꾸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좀 더 명확한 표현, 아름다운 표현 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듬은 말이 본래의 뜻을 정확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단어 구성이 복잡하고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낭비이다.

## 2.2.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 |            |                     |
|------------|---------------------|
| ① 민족정신의 확립 | ② 민족 문화의 발전         |
| ③ 사회의 정화   | ④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서 시작하여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까지 이어졌다. 과거 대다수 국민은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절로 서양식 외국어를 쉽게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빈번하게 쓰면 외국어 교육에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순수 우리말 쓰기가 오히려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동안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까지도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대다수 사람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말 다듬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서와 정신과 얼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르므로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전승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 민족은 자국어어를 통해 각기 특이한 민족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영국이 인도는 내어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갈고 닦아 훌륭한 영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다듬는 이유는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훌륭한 민족 문화를 창조·발전하려는 데 있다.

언어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어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兩班)’이란 말이 생겨났고, 장인(丈人)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丈家)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말이 횡행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면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국어를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씬으로써 사회적 정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말 다듬기는 언중들이 적극적인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말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갈고 닦아 아름답고 풍부한 보고(寶庫)로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 2.3.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 ① 순수 우리말이 아닌 말(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 ②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난해한 한자어·외국어)
- ③ 바른 우리말이 아닌 말(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
- ④ 고운 우리말이 아닌 말(비속한 말이나 표현 등)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인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외국어 중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착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래어라고 모두 다듬을 수는 없고 다듬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나 지금까지 불편 없이 써 왔던 외래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 왔던 외래어를 다듬을 경우 다듬은 말이 오히려 생소하여 새롭게 익히는 데 불편하다면 현실적인 수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즉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구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구 외래어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빨리 대처하면 다듬은 말을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에서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등의 어휘를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다면 바른 우리말 쓰거나 고운 우리말 쓰기에서는 표기, 발음, 문장 등과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김길동(2009), 우리말 다듬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김형배(2004/2009),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김형배의 한말글사랑\*생활국어 연구소 <http://cafe.naver.com/hanmal>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말터) <http://www.malteo.net>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국어생활종합상담실) 1599-9979(국어친구)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

박 종 덕\_국립국어원 강의교수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

박 종 덕\_국립국어원 강의교수

## 한글 맞춤법

###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sup>1</sup>를 소리대로 적되<sup>2</sup>, 어법에 맞도록<sup>3</sup>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꼳/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① 꼬치, 꼬츨, 꼬또, 꼰만 / 갑씨, 갑쓸, 갑또, 감만 / 떠기, 떠글, 떡또, 평만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끄타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 2. 한글 맞춤법 익히기

### 2.1. 같아/\*가태(한글 맞춤법 제15항)

“좋은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같-’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타]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참고] 바라/\*바래

### 2.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



은,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참고] 낮설다(→ 낮선), 내걸다(→ 내건), 절다(→ 전)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
- ㄹ. {녹슨/\*녹슬은} 철모, 철모가 {녹스니/\*녹슬으니} ……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ㄹ’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분다’(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 불규칙 용언인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분다’는 ‘분고, 분지, 분계, 불으면, 불어서, 불었다, 불은, 불을, ……’과 같이 활용한다.

### 2.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 2.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ㄱ. ‘이’로 적는 경우

- ①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직이, 두둑이 ……
- ②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 ③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 ④ 부사 뒤: 곰곰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
- ⑤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ㄴ.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푹푹히 ……
- ②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 2.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뉘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빛깎’, ‘성깎’ 등도 ‘\*때깎’, ‘\*빛깎’, ‘\*성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깎’이 옳다.

[참고]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

## 2.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2.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찍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찍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 2.8. 덮이다/\*덮히다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ㄴ’, ‘ㄷ’, ‘ㄹ’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참고] 먹히다, 막히다 / 굶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 2.9. 되라/돼라(한글 맞춤법 제35항)

‘되라’와 ‘돼라’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라’이고 후자는 ‘되- + -어라’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돼’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돼라(되- + -어라).”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라’가 연결되면 ‘되라’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참고] 피다, 꺾다, 뇌다, 되다, 뒹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썩다, 죄다, 찍다

ㄱ. 되지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해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 / 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ㄷ.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되- + -(으)라].

※ 하라

ㄹ. 선생님, 내일 봐어요/봬요/\*봬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쇠어요/쇄요/\*쇠요?

## 2.10. 디뎠다/\*딛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딛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딛고, 딛자, 딛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딛어’, ‘\*딛었다’, ‘\*딛으며’, ‘\*딛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터), 디디었다(디뎠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갓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어미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 (디터)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딛다		딛고	딛지	딛니?	*딛어	*딛으니	*딛으며	*딛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 (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갓다		갓고	갓지	갓니?	*갓어/ *갓아	*갓으니	*갓으며	*갓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기본형 어미	-고	-지	-나?(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 2.11. -르걸/\*-르꼴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르까’, ‘-르쏘냐’, ‘-르꼬’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 ㄱ.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꼴}.
- ㄴ. 내가 해 {줄게/\*줄께}.
- ㄷ.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 2.12. -(으)로서/-(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으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므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므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 2.13.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ㄷ.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 2.14.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췄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아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 2.15.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 ①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ㅂ, ㅅ, ㅈ]로 변할 때(즉,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 꺾병, 기뻏값, 대뻏값, 등뻏길, 고깃국, 만뻏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뻏길, 시냇가, 장뻏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횡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뱃머리, 수돗물, 뒷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깻잎, 나뭇잎, 베갯잇, 옷잇, 예삿일, 사삿일
-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 곳간(庫間), 차간(車間), 퇴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
  - ※ ‘기차간(汽車間, ← 기차 + 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 + 방)’은 위 6개 한자어 외의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 ㅁ. 된소리,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는 ‘ㅅ’을 표기하지 않음.
  - 쥐빨, 뒤풀이, 뒤쪽, 뒤편, 위쪽, 위간
- ㅂ.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등

## 2.16. 며칠/\*몇일/\*몇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몇 + 일’은 ‘몇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몇’ 다음에 ‘일(日)’이 오면 [며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몇 월 → [며월], 몇 인 → [며딘], 몇 억 → [며억], 몇 원 → [며원]
- ㄴ. 몇 향 → ([면향]) → [며탕], 몇 해 → ([면해]) → [며태],  
   몇 호 → ([면호]) → [며토]
- ㄷ. 몇 날 → ([면날]) → [면날], 몇 년 → ([면년]) → [면년],  
   몇 묶음 → ([면무꿈]) → [면무꿈]
- ㄹ. 몇 일(日) → \* [며딜]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끝소리의 ‘ㄷ’은 중화되어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며월]이 아니라 [며뿔]이 되고, ‘몇 + 역’은 [며척]이 아니라 [며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웃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몇 + 일’의 구성은 [며덜]로 소리가 나와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며덜]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며칠]은 현대 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sup>1)</sup>

‘며칠’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일부에서는 ‘몇 일’과 ‘며칠’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며칠’이라고 써야 한다.

- ㉠.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x) →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 ㉡.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 ㉢.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 2.17.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 ㄴ.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문뜩],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참고] 깜박/깜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떡끈떡, 방긋/방긋, 번득/번뜩, 번듯/번뜻, 번적/번쩍, 생긋/생긋, 상긋/상긋, 흘긋/흘긋, 흘깃/흘깃

1) 사실 ‘며칠’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2. 몇 날)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 ‘며칠’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오〇이 며칠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ㄴ. 며츠를 설워히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 2.18. -박이/-배기/-빼기(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의미	단어 형성의 예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 짐승,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접미사	덧니박이, 점박이, 외눈박이, 토박이, 불박이,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배기	1. 그 나이를 먹은 아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2. 어떤 것이 짝 차 있음.	알배기, 나이배기
	3.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공짜배기, 진짜배기, 대짜배기
-빼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예외) 뚝배기, 언덕배기

## 2.19. 백분율/\*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어 ‘렬,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렬, 률’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率 栗 慄	ㄴ을 제외한 자음이나 외래어 다음	률	악률(樂律), 출석률(出席率), 굴절률(屈折率), 음률(音律), 결합률(結合率), 법률(法律), 성공률(成功率), 생률(生栗), 영률(Young率: 고체 탄성률의 하나)
	모음, ㄴ 받침 다음	율	규율(規律), 분해율, 비율(比率), 실패율, 참가율, 백분율, 불문율(不文律), 선율(旋律), 전율(戰慄), 평균율(平均律)
列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竝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 2.20.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ㄱ.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ㄴ.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ㄷ.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 2.21.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ㄱ. 붙이다 : 반창고를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따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걷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 ㄴ. 부치다 :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 2.22. 사귀어/\*사겨/\*사귀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뀐’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겼니? / 짝이 또 \*바뀌었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참고] 지저귀어, 바뀌어, 나뉘어, 야위어, 비취어, 할퀴어

## 2.23.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찮’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 2.24. 벌에 쓰였다/씨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ㄱ, ㅋ, ㆁ, ㆅ,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ㄱ, ㅋ, ㆁ, ㆅ,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 ~ 씨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 ㄱ. (쏘- + -이- →) 쏘이다 ~ 씨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씨었다}.
- ㄴ. (꼬- + -이- →) 꼬이다 ~ 꺾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꺾였다}.
- ㄷ. (눅- + -이- →) 누이다 ~ 눅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눅였다}.
- ㄹ. (뜨- + -이- →)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였다}.
- ㅁ. (쓰- + -이- →) 쓰이다 ~ 씩다: 글씨가 {쓰여/씩어} 있는 공책.

다만, ‘고이다/꺾다’의 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고인돌’은 쓸 수 있고 ‘귤돌’은 쓸 수 없다.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 2.25.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ㄱ’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꼽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곱-[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야’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곱-’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ㄱ. 가깝다:	가깝고	가깝지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운
ㄴ. 곱다:	곱고	곱지	고와	고우니	고운
돕다:	돕고	돕지	도와	도우니	도운

## 2.26. 아니요/아니오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ㄱ. 아니(부사, ㉠ 안):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 ㄴ. 아니(감탄사): 밥 먹었니? → 아니, 아직 못 먹었어. / 응,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 [아니요(아뇨)], 아직 못 먹었어요. / 예, 먹었어요.
- ㄷ. 아니다(형용사): 직원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아니었어}. /  
직원이 아닌 사람

ㄱ.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ㄴ.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ㄷ.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하십시오체)의 어미 ‘-ㅂ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ㄴ.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반대말로 쓰는 [아니요]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에 ‘예/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요’를 써야 한다. ‘아니요’는 줄여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 ‘요’와 ‘오’의 구분 방법

국어의 특성상 조사(격조사, 보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예 ㄴ. 참조)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예 ㄷ. 참조). 한편, 보조사는 다른 조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도 두루 결합될 수 있다(예 ㄹ.~ㅅ. 참조).

- ㄱ. 나는 밥을 먹었어. / 철수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 ㄴ. 나 밥 먹었어. / 철수 시골 다녀왔습니다. → (보)조사 생략
-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다] → 어미 생략
- ㄹ. 철수가요 어제는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조사 겹침 / 해요체
- ㅁ.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는} 나는구나. → 부사 + 보조사
- ㅂ.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는} 보았어. → 동사 + 보조사
- ㅅ.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는} 한다. → 형용사 + 보조사
- ㅇ. 이리로 앉으오. / 좋도록 하오. / 이 문을 여시오.
- ㅈ. 이리로 앉아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ㅇ.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ㅈ.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존대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오.”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

다(한글 맞춤법 제15항).

## 2.27. 아무튼/\*아뉘든(한글 맞춤법 제40항)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뉘-’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참고]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하지만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2.28. 안/않-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 2.29. 안치다/얹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얹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멀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찜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얹히다’

(‘앉다’의 사동형)는 ‘앉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앉히다’와 같이 쓰인다.

### 2.30. 어떡해/어떻게/\*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럭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럭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럭하나 저럭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참고] 이럭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2.31. 왜지/\*웬지

“오늘은 왜지 기분이 좋아.”에서 ‘왜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왜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참고]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 2.32. 이에요/이어요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에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에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예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예요(아녜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에요’가 붙은 ‘\*아니예요’, ‘\*아니어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b>이에요</b> → 영숙 <b>이에요</b> 영숙이 + <b>이에요</b> → 영숙 <b>이에요</b>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숙이에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b>이에요</b> ’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b>예요</b> → 영숙 <b>이에요</b> ’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 <b>이에요</b> ’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b>이에요</b> → 영희 <b>예요</b> 영희 + <b>이에요</b> → 영희 <b>여요</b>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b>이에요</b> → 집 <b>이에요</b> 집 + <b>이에요</b> → 집 <b>이에요</b>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b>이에요</b> → 회사 <b>예요</b> 회사 + <b>이에요</b> → 회사 <b>여요</b>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 <b>예요</b> → 아니 <b>예요(아녜요)</b> 아니 + (이) <b>어요</b> → 아니 <b>어요(아녀요)</b> ※ ‘*아니예요/*아니어요’는 잘못.

### 2.33. 있음/\*있슴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 + -(으)ㅁ’일 때는 ‘\*먹슴’이 아니라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먹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 2.34. 자랑스러운/\*자랑스런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러운’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깎다, 눅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눈, \*준, \*가깝, \*무겁, \*쉽’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2.35. 치러/\*치뤼(한글 맞춤법 제18항)

‘(시험을) 치르다’는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뤼, \*치뤼다’로, 심지어는 ‘\*치뤼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궜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궜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ㄱ. 시험을 {치르/\*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뤼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궜/\*담어}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었다.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궜다/\*담졌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궜}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궜라}.

## 2.36. 통틀어/\*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이청준, 춤추는 사제〉

-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 원이 들어갔다.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줘. 〈박완서, 도시의 흥년〉

### 2.37. 퍼레지다/\*퍼래지다

‘ㅎ’ 발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하얏다’는 ‘하얏- + -아 지다 → 하얘지다’, ‘허엿다’는 ‘허엿- + -어 지다 → 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았/았-	-(으)니?(의문)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맸니/까마니?
꺼맣다	꺼맣고	꺼맣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맸다	꺼맸니/꺼머니?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갸다	빨갸니/빨가니?
뺨겉다	뺨겉고	뺨겉지	뺨건	뺨거니	뺨게(지다)	뺨갸다	뺨갸니/뺨거니?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얀	하야니	하얘(지다)	하언다	하언니/하야니?
허엿다	허엿고	허엿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언다	허언니/허여니?

### 2.38. 유의해야 할 띄어쓰기

#### (1) 들

- ㉠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남자들, 학생들  
 ㉡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쌀, 보리, 콩, 조, 기장√들(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 (2) 뿐

- ㉠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남자뿐이다, 셋뿐이다

- ㉠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웃을√뿐이다. 쳐다봤을√뿐이다.

### (3) 대로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법대로, 약속대로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아는√대로 말한다. 약속한√대로 이행한다.

### (4) 만큼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 붙여 씀.)  
(예)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볼√만큼 보았다. 애쓴√만큼 얻는다.

### (5) 만

- ㉠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떠난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만에 떠나갔다.

### (6) 지

-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킴 : 어미(→ 붙여 씀.)  
(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그가 떠난√지 보름이 지났다. /  
은행에 간√지 한 시간 만에 돌아왔다.

### (7) 차(次)

- ㉠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고향에 갔던√차에 선을 보았다.

(8) 판

㉠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명사(→ 붙여 씀.)

(예)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바둑 한√판 두자. 장기를 세√판이나 두었다.

# 표준어 규정

## 1. 머리말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여기서는 ‘사투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릇(해산물), 돛꿩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짝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 2.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어는 모든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일하여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이나 특수어를 멋대로 쓴다면 한 나라 안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언어에서 분화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각기 그 지방의 방언으로 주고받는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이다. 이럴 때에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통일(統一)의 기능이라고 한다.

둘째, 표준어는 준법정신을 길러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표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고정시킨 것이다. 때로는 어형(語形)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규범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일정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문 규정도 교육(교과서), 행정(공문서) 등의 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정(관련 내용이 ‘국어기본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므로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준법정신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준거(準據)의 기능이라고 한다.

셋째, 표준어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어휘를 골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 훈련을 하여야 한다.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공공(남)을 배려하여 말하는 것은 교양을 갖추는 일이 된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표준어는 사투리를 쓰는 데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도구적 용도 외에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는 통일의 기능을 비롯하여 준거의 기능,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3. 표준어 규정의 제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회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

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 4.1. 표준어 사정 원칙

#### 4.1.1. 제1장 총칙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3장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은 표준어를 사정(査定)하는 원칙이 명



시되어 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 - 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사회적 조건). 표준어는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준어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시대적 조건).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지역적 조건).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는 단시일에 결정할 수도 없고, 펍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따로 지속적으로 사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정부가 고시하였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된 이후에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 전신)에서 인명·지명 편(1986)과 일반 용어 편(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도 동구권 인명·지명 편(1993)과 북구권 인명·지명 편(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있는 외래어 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1998). 또한 1999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사정된 외래어를 거의 다 신고 있다.

#### 4.1.2.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발음의 변화와 표기의 개정도 함께 수반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 4.1.2.1.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 나발꽃), 칸 (× 간),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미 일반화된 것을 명문화하였다.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뀐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유의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간'이라고 발음하므로 '칸막이, 빈칸, 방 한 칸'처럼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데 모두 '칸'으로 정하였다.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는데, '밀천을 털다', '도둑이 빈 집을 털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제4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를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 가을카리), 분침(× 폰침)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 강남쿵), 사글세(× 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남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월세(月貰)’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둥), 둘째(× 두째), 셋째(× 세째), 빌리다(× 빌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둥’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乞, 祝’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하였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 - ’로 통일한다.  
 수평(× 수평, 수평), 수놈(× 수놈, 수소(× 수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 수강아지), 수평아리(× 수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 - ’으로 한다.  
 수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역사적으로 ‘암 - 수’의 ‘수’는 명사 ‘술’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다만 1’은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술’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지만, 일단은 ‘다만 1’에서 제시된 단어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sup>1)</sup> ‘다만 2’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였다.<sup>2)</sup>

1) ‘수컷’,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돼지’, ‘수탕나귀’, ‘수키와’, ‘수톨찌귀’는 현대 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수-’ 뒤에 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별, 수뱀’ 등의 다른 단어들은 ‘수-’ 뒤의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지 않는다(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 1. 참조).  
 2) ‘숫-’은 제시한 세 단어에 국한하여 적용함. 유사한 음운 환경의 다른 어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단어는 ‘수-’로 표기한다. (예: 숫야크(×)/ 수야크(○), 숫여우(×)/ 수여우(○), 숫지네(×)/ 수지네(○)).

#### 4.1.2.2. 제2절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 깡충깡충), - 동이(× - 동이), 오뚝이(× 오뚝이)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 부주), 사둔(査頓, × 사둔), 삼촌(三寸, × 삼촌)

국어는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 그런데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동이’도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여 ‘-동이’로 하였으므로 ‘짱둥이, 귀염둥이, 막둥이’가 표준어이다.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항은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촌’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나기), 냄비(× 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미쟁이), 멧쟁이(× 멧장이)

‘ㅣ’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떡이다’까지 ‘손잡이, 떡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신출나기, 풋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을 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같은 사례로 ‘아기, 아버, 지팡이’는 표준어이고, ‘애기, 애비, 지팡이’는 비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또한 붙임 2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匠人)에게는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상당한 단어들이 ‘-쟁이’가 되었는데, ‘요술쟁이, 마술쟁이, 무식쟁이’가 그 예이다(표준어 모음). 따라서 ‘개구장이, 욕심장이’는 비표준어이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미류나무), 으레(× 으레)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괴, 귀, 과, 규’ 등의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확실히 → 학실히, 벼 → 베, 가위 → 가이’ 등이 그런 예이다. 위의 사례에서 든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도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단어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으므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다만, ‘팍하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표준어 모음).

제11항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 구료), 깍쟁이(× 깍정이), 나무라다(× 나무래다)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튀기(× 트기)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를 모은 항목이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

어로 인정하였다. ‘각정어’는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나 ‘각쟁어’가 아니라 ‘각쟁어’를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여전히 ‘각정어’이다. ‘나무라다, 바라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람’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람’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 → 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12항 ‘옷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 옷눈썹), 윗니(× 옷니), 윗도리(× 옷도리), 윗목(× 옷목), 윗배(× 옷배), 윗입술(× 옷입술), 윗자리(× 옷자리)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짜(× 옷짜), 위쪽(× 옷쪽), 위층(× 옷층), 위턱(× 옷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옷국(× 윗국), 옷돈(× 윗돈), 옷어른(× 윗어른), 옷옷(× 윗옷)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옷’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맞춘 것이다. ‘다만 2’는 발음이 워낙 ‘옷’으로 굳은 단어들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대체로 ‘윗목 - 아랫목’, ‘윗자리 - 아랫자리’처럼 ‘위 -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옷 -’을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옷’으로 표기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윗’으로 통일함으로써 ‘옷 - 윗’의 혼란을 거의 줄였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句節, × 귀절), 대구(對句, × 대귀), 시구(詩句, × 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 구글), 글귀(× 글구)

그동안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匂’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匂’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다. 따라서 ‘귀글, 글귀’는 예외로 하였다.

#### 4.1.2.3. 제3절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파리(× 포아리), 무(× 무우), 생쥐(× 새앙쥐), 솔개(× 소리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대부분 준말 형태를 인정한 이들 말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말은 대개 긴 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 귀개), 부스럼(× 부림),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아래로( × 알로)

본말과 준말 중에서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다만 ‘마음/맘, 미음/میم’은 복수 표준어이고, 정월 대보름에 쓰는 ‘부림’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시누이/시누/시누, 외우다/외다, 찌꺼기/찌끼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이다. ‘외우다/외다’의 경우 종래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인데 ‘외우다’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다. ‘머무르다/머물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머무르-고, 머물-고’처럼 자음 어미(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모음 어미(‘-어’, ‘-어서’, ‘-오’ 등)가 연결될 때는 ‘머무르-어→머물러’로 써야지 ‘머물-어’로 쓸 수 없다. 이것은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어, 갖어라, 갖었다’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즉, ‘가져, 가져라, 가졌다’로 써야 하는 현상)와 일관성 있게 다른 것이다.

#### 4.1.2.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sup>3)</sup>(× 귀엣고리), 꼭두각시(× 꼭둑각시), 너(四, × 네) 돈,  
 천장(× 천정), -(으)려고(× -(으)르려고), -습니다(× -읍니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너/넉(四), 서/석(三)’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던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의심이나 원인 따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다만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쓴다.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sup>4)</sup>’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깎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명사형 ‘있음, 없음’ 따위를 ‘있슴, 없슴’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와는 상관이 없다. 같은 예로 ‘먹다’의 명사형은 ‘먹음’이지, ‘먹슴’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4.1.2.5. 제5절 복수 표준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 
- 3) 여자들이 귤밭에 다는 장식품을 가리킬 때는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쓸 수 있지만 귀를 감싸 막거나 귀에 거는 방한용품을 가리킬 때에는 ‘귀걸이’만 쓸 수 있다.
  - 4) 천장(天障): 1.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함.(=보퉁). 2. 반자의 걸면.<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이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괴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죄다/조이다, 쪼다/쪼이다.

그동안은 ‘소+ | (의)’인 ‘쇠-’와 ‘소’를 모두 인정하여 ‘쇠고기, 소고기’ 모두가 표준어이다. 다른 사례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이다. ‘괴다/고이다’의 명사형은 ‘꺨/고임’이며, ‘꺨임’은 쓰지 않는다. ‘고이다’와 ‘괴다’가 모두 복수 표준어이긴 하지만 ‘고인돌(支石墓)’의 경우에는 ‘고인돌’로만 쓰며 ‘꺨돌’로 쓰지 않는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고까/꼬까, 코린내/코린내, 꺼림하다/끼름하다, 나부랭이/너부랭이

어감(語感)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나부랭이/너부랭이’에서 ‘너부랭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랭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1.3.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4.1.3.1.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 설겅다), 애달프다(× 애답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설겅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 ‘설거지’도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부터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명사 ‘설거지’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겅이’는 비표준어이다. ‘애답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닭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 4.1.3.2.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 맹눈), 박달나무(× 배달나무), 사례논(× 사례답)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고봉밥(× 높은밥), 총각무(× 알타리무)

고유어라도 생명력을 잃은 것은 버리고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 4.1.3.3.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원래 ‘우렁쟁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밑머리(× 귓머리), 빈대떡(× 빈자떡), 코주부(× 코보)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조항이나,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다. 가령 ‘빈자떡’은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

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 4.1.3.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 낫우다), 광주리(× 광우리), 길잡이(× 길압잡이)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셋별(× 새벽별)  
술고래(× 술푸대),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입담(× 말담), 주책없다(× 주책이다), 청대콩(× 푸른콩)

제17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단어들은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語順)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不定辭)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4.1.3.5.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뭇, 가엿다/가엿다, 개숫물/설거지물, -거리다/-대다, 고깃간/푸줏간, 관계없다/상관없다, 꼬까/때때/고까, 녁쿨/딩굴, 뒷말/뒷소리, 탄전/탄칭, 말동무/말벗, 벌레/버러지, 뽕두라지/뽕루지, 서럽다/싫다, 신/신발,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이에요/-이어요,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책씻이/책거리, 혼자되다/홀로되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는 현실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뭇/가뭇’ 중에서는 ‘가뭇’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뭇’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엿다/가엿다’는 활용형에서 ‘가엿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

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에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와 ‘에, 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올다’의 어간 ‘올-’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표준어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요한 어문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아무리 다듬어진 말과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정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애를 불러오고 친근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언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지역 우월주의에 빠진다거나 다수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표준어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 국어연구소(1990), 표준어 모음, 국어생활 제22호 별쇄.
-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탐출판사.
- 이승재(1998),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87), “표준어의 기능”, 방송언어연구논총, KBS.
- 이익섭(1997), “방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전동기(1988),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의의”, 문교행정(1988. 2.) 통권 74호, 문교부.
- 조선어학회(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 최용기(1996),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김 익 진\_국어생활연구원 원장, 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김 희 진\_국어생활연구원 원장, 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 공문서 쓰기의 지향점

공문서의 글은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이라는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듯함’이란 어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요, ‘명료함’이란 당초 의도된 내용으로만 해석되어 신빙성과 확실성을 주는 것이요, ‘간결함’이란 짧고 명쾌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요, ‘편안함’이란 내용이 쉽고 친숙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 첫째 마당: 반듯함

####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목적을 정하는 것과 함께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글이 대상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고, 대상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때 그 글은 ‘대상 부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고압전선 접근 금지→고압전선에 가까이 가지 마시다.
-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 두시다.

## 2. 충실하고 정확하게

글은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하며 분명하여야 한다. 내용의 충실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보는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 (1)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글은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은 질 높은 정보, 개념, 연구 성과, 합리적인 논거 등 독자가 ‘얻을 것’이 충분히 들어 있고, 그 내용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 <운전자 여러분!>

-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착용시 사망률 22.8%, 부상률 16-18% 감소(→하락/저하)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착용시 사망률 22.8%, 부상률 16-18% 감소(→하락/저하)

### (2) 합리적으로 하기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글쓴이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논리가 정연하지 않게 되어 문장의 의미 파악도 쉽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문서를 만든 관련 부처에 대한 신뢰성도 손상된다.

- (1) 때로는 식생활을 해결할 비용조차 부족한 경우도 꽤 많다.
- (2)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다 보니

### (3) 균형 맞추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연결하거나 접속할 때에는 연결되는 앞뒤 관계가 논리적인지, 앞뒤 말이 문법적으로 같은 자격이 있는 어구나 어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1) 시청자가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 많으며→고소득자,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 (2) 기념관, 조형물, 거리명칭, 역사교육 등을 통해 과거의 삶을 현재에 재현하여  
→ 기념관 건립, 조형물 설치, 거리 명칭 부여, 역사 교육

### 3. 통일성 있게

글에서 말하는 ‘통일성’은 글의 각 대목이 내용상으로 전체적인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이다. 글에서는 특히 본문과 제목 간의 유관성, 문장 간의 긴밀성, 접속 부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1) 글에 맞는 제목 달기

제목에는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고도 그 개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요약·압축과 암시의 기능,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안내의 기능 등이 있으므로, 제목은 그 주제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b>&lt;여성 복지 시설 현황&gt;</b>			
구분	시설명	전화 번호	소재지
미혼모 시설	○○○	○○○	○○○
가정폭력 상담소	○○○	○○○	○○○
성폭력 상담소	○○○	○○○	○○○

#### (2) 문장 간의 긴밀도 높이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표현하려면 구성 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한 문단 안에서나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긴밀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장은 왜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1) 참가비를 내신 분은 명찰을 준비하여 드리고 강좌 및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으며 점심, 만찬이 제공됩니다. 명찰 케이스 속에 식권이 삽입되어 있고 식사 시 이 식권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내신 분께서는 준비한 명찰을 드립니다. 이 명찰을 다셔야 강좌나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찰 갑 속에 든 식권을 호텔 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식당에 들어가 점심과 저녁을 접수실 수 있습니다.

### (3) 접속 부사 잘 쓰기

접속 부사는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연결하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로, 적절하게 잘 사용된 접속 부사 역시 글이 통일성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하는 한 요소가 된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처리됩니다). →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 4. 일관되게

공문은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므로 이에 합당한 어조나 문체를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1)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함.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을 이루게 하고, 부당한 공유를 피하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고르며 사동·피동 표현을 바로 하는 것 등은 문법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예이다. 내용을 담아 단어나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말 문법의 규칙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올바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을 받치는 서술어와 해당 문장 성분들이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답하듯이,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와 서로 호응하여야 한다.

- (1) 제조장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하는 판매장→사실을
- (2)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응할/응하게 하기 위해

## (2)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연결하거나 접속할 때에는 연결되는 앞뒤 관계가 논리적인지, 앞뒤 말이 문법적으로 같은 자격이 있는 어구나 어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1)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애국심을 고취하고 ~
- (2) 사망, 행방불명, 부상 또는 기타 희생을 입은 분과 그 유족→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하거나 기타 희생하신 분과 그 가족
- (3) 짧은 시간과 경비에 집착한 나머지 →짧은 시간과 적은(부족한) 경비에 ~
- (4) 감면을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감면율을 인하하고(낮추고) 감면 기간을 단축함.
- (5)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 ~ 보호하거나
- (6)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  
→ ~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 (3) 조사·어미 잘 고르기

교착어인 우리말은 주로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로 문법 관념을 나타내므로 조사나 어미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문장 전체를 망치게 된다.

- (1-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을 ~.
- (1-2) ……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를 ~.
- (2-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에게 ~.
- (2-2)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에게 ~.
- (3)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지산선고의 취소이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 혼인이라도 ~.
- (4)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으로 ~.
- (5)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다르게 보고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어떠한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있으므로 ~.

## (4) 사동법·피동법 바로 쓰기

공문서에서 ‘사동’(使動. 시킴)과 ‘주동’(主動. 직접 함), ‘피동’(被動. 당함), ‘능동’(能動. 스스로 함)을 혼동하는 예가 보인다. 특히 ‘-하다’를 쓸 자리에 ‘-시키다’

혹은 ‘-되다’를 쓰거나, 피동 접사(-이-, -히-, -리-, -기, -되다-)만으로 충분한 자리에 ‘-어지다’를 덧붙이는 일 등이 자주 나타난다.

- (1-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강화한다
- (1-2)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 → 경감할
- (1-3) 하도급법은 ~ 불공정성을 시정시키기 위한 법률로서→시정하기
- (1-4)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 접목해
- (2-1) 돌로 나뉘어지지 않고
- (2-2) 글이 잘 쓰여지지 않아서
- (2-3) 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 6. 어문 규정 지키고

공문서에서는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여 정부 이름으로 고시한 어문 규정을 충실히 잘 따라야 한다. 공문 중에는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등이 보편적인 어문 규정에서 벗어나는 예가 보인다.

### (1)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따르기

어문 규정에는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밝힌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등을 체계화한 표준어 규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인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인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들 어문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가나다전화(02-771-9909)’에 문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 (1) 첫걸음을 내딛었다. → 내디뎠다.
- (2) 물품을 갖었다. → 가졌다.
- (3) 지방에 머물었다. → 머물렀다.
- (4-1) 갯수가 많아 → 개수(個數)
- (4-2) 사회에 기여한  댓가 → 대가(代價, 對價)
- (5)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빌려
- (6)  세째 아이부터 지원된다. → 셋째
- (7) 창립  첫돌 기념 행사를 열었다. → 첫돌
- (8-1) 안성맞춤으로 일이 잘 풀렸다. → 안성맞춤
- (8-2) 어려운 문제인데도 정답을 정확히  맞추었다. → 맞히었다.
- (9)  네트워크 →네트워크

- (10-1) 레저용품→레저용품
- (10-2)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비전
- (11-1) 리더쉽 →리더쉽
- (11-2) 파트너쉽→파트너쉽
- (12)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제공 →서비스센터
- (13)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 →시시
- (14) 녹음 테입→ 테이프
- (15) 팜플렛→팸플릿

## (2) 단어 속의 숫자 표기 맞게 하기

수를 표기하는 방식을 어문 규정에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자가 숫자를 어려움 없이 읽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나 그 밖의 모범적인 출판물에서 그동안 취해 왔던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공문서에서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 2가지 조건→두 가지
- (2) 3사람이 지원하여→세 사람
- (3) 5살 되던 해에→다섯 살

## (3) 띄어쓰기하기

띄어쓰기 규정은 책의 가독성(可讀性,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력의 정도)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글을 쓸 때에는 이 띄어쓰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문장에서 띄어쓰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가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 (1)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 (4) 문장 부호 사용하기

문장 부호는 문장의 뜻을 잘 나타내도록 돕고, 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한 것으로, 독해에 큰 몫을 한다. 어떤 부호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쓰인 문장 부호는 글의 내용을 독자가 바르고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글에 현장감을 붙여 넣어 생기를 더해 주기도 한다.

## 〈1〉 반점(십표)

- (1) ①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②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③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④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 〈2〉 온점(마침표)과 쌍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5) 표준 화법 따르기

우리말은 상하 관계를 엄격하게 반영한 높임법 사용이 엄격한 편이다. 이 중 호칭어 지칭어와 상황에 따른 인시말 등을 대상으로 1991년 국립국어원과 언론사 공동으로 표준 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공 문서나 교육용 문서에서 표준 화법을 제대로 따른 예는 드문 편이다.

- (1)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 ~을 축하드리며→ ~을 축하하며  
(3) ~을 당부드리면서→ ~을 당부하면서

## (6) 「국어기본법」에 맞게 하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국어기본법 제14조). 모든 공적인 발간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국어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 (1) TV와 CD→텔레비전과 시디  
(2) bus와 taxi→버스와 택시

## 7. 마무리 잘 짓고

‘완결성’은 의문의 여지가 남지 않는 상태의 성질을 가리킨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글은 완결성이 부족한 글이다.



- (1) 저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당일 입찰 장소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같음
- (2)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짧은 문구
- (3) 신고서 옆면에 항목별로 작성 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 ◆ 둘째 마당: 명료함

### 8. 명료하게

한 문장이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명료함’이다.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될 때 오해나 곡해가 생길 리는 없을 것이다.

#### (1) 의미 뚜렷이 하기

문장을 명료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뜻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도록 명백하고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중의적인 표현과 모호한 표현은 명료성을 해쳐 의미 해석에 혼란을 주므로 피하여야 한다.

-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밝힌 사항대로 원상회복할

#### (2) 지시어 명확히 하기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상태, 장소, 사람, 사건 등을 직접 가리키거나, 앞에 나온 말(때로는 뒤에 올 말)을 대신하여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해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방해받기도 한다.

- (1)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같음하여 그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의 자녀의 자녀

### (3) 어순 적절히 하기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하려면 어순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번잡한 표현을 피할 수 있고, 글을 읽을 때 호흡이 편해진다.

- (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2)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 많았으며
-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 접속 부사 오남용 않기

‘및’, ‘내지’, ‘또는’ 등의 접속 부사는 자칫 글을 딱딱하게 만들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내지’는 중의적으로 쓰일 소지가 있고, ‘또는’은 부당한 접속을 이룰 소지가 있으므로 꼭 있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제8조 및 제9조의 경우 →제8조와 제9조
- (2) ~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준용한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제5조 또는 제7조
- (3) ~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취소하거나 제한할

### (5) 지나친 생략 안 하기

‘생략’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략된 말은 대체로 복원할 수 있으며 생략했을 때나 복원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말은 앞뒤 문맥을 통하여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다만, 문법에 어긋나게 성분을 생략하면 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해야 할 말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모호한 문장을 만들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 (1) 종전 유지→ 종전대로 유지함./종전 규정을 유지함./종전대로 함.
- (2) 일시: 의거, 서거, 탄신일(誕辰日) 등 기념일→의거일, 서거일, 탄생일
-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이나
- (4)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공헌하였기에/공헌하였으므로

##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법 전체 조항의 구조가 짜임새 있고 조항을 이루는 문장이 어법에 맞으며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여야, 일반인이 공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야말로 좋은 공문서를 쓰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 (1) 들어맞는 말 찾기

글을 잘 쓰려면 단어를 많이 익혀 어휘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골라 사용할 때 좋은 글을 쓸 수 있지만, 단어 하나라도 잘못 선택하면 문장 전체, 나아가 문단이나 글 전체를 망가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 (1) 병에 걸릴 가능성(可能性) → 우려/소지
- (2) 난이도(難易度)를 낮추어 문제가 쉬워졌다. → 난도/곤란도
- (3) 국민 만족도가 선진국에 버금간다는 평가 → 과 맞먹는다는
- (4)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分離收去)한다. → 분류 배출
- (5) 추진하는 와중(渦中)에 → 중에/과정에
- (6-1) 전문가의 자문(諮問)을 받아 → 조언
- (6-2) 자문을 구하려고 대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 조언
- (7-1) 수강 희망자는 속히 접수(接受)하세요. → 신청/제출
- (7-2) 그 단체는 고발장을 구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 제출하기로
- (8) 진위 여부(眞僞與否)를 확인하도록 → 진위를
- (9)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 본보기

### (2) 동음어 · 다의어 피하기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어나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다의어를 피하는 것도 글의 명료성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동음어나 다의어를 글의 문맥 속에서 구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명료해지도록 장애를 해결하는 동안 시간과 노력이 드는 비효율성이 생기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동음어 피하기

- (1) ~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것으로 → 공공연(公公然)하게/ 당당하게/땡땡하게
- (2) ~ 원본(元本)의 순서로 번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원금
- (3) 이웃 거주자는 ~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 → 참아야 할

## 〈2〉 다의어 피하기

- (1) ~ 재산으로부터 수취(收取)한 과실(果實) →이득
- (2)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부터 제915조까지에서
- (3)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자녀는

### (3) 동어 반복 피하기

같은 말을 거듭 사용하거나 뜻이 겹친 말은 피해야 한다. 글의 정확성과 응결성과 응집성을 해치고 읽을 맛을 떨어뜨려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깔끔함과 명료성을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말은 적절히 숨여내고 때 내어야 한다.

- (1) 낙도 어린이와 자매 결연(結緣)을 맺고 →결연하고/인연(을) 맺고
- (2) 잔존 기간 동안 계속 감면 적용 →기간
- (3) 매 순간마다 포착되고 있는→ 매n순간/순간마다
- (4) 공훈을 널리 선양하거나 →널리 떨치거나/선양하거나
- (5) 서민들의 애환(哀歡)과 기쁨 →애환/슬픔과 기쁨
- (6) 미리 예측한 장소 → 예측한
- (7) 접수받은 즉시 취업보호대상여부를 전산 확인 → 접수한
- (8) 탄신일(誕辰日) →탄신/탄일/탄생일
- (9) 주요 현안과제/현안문제 →현안

### (4) 발음 혼동어 바로 쓰기

발음 혼동어도 의미의 명료성을 해친다. 발음 혼동어는 제대로 된 말과 음이나 뜻을 혼동한 까닭에 잘못 사용하는 말로서,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법에 어긋나고 글을 읽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독해에 지장을 준다.

- (1) 재적 인원 중 응시자 수→재적 인원
- (2) 챙피→창피(猖披)
- (3) 특이할 만한 사항-특기할

## 그 밖의 예

부적절한 표현	적절한 표현	뜻
방방곳곳	방방곡곡 (坊坊曲曲)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성대묘사	성대모사 (聲帶模寫)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야반도주	야반도주 (夜半逃走)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
양수겸장	양수겸장 (兩手兼將)	장기에서,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름.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절대절명	절체절명 (絕體絕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 순화어: 피할 수 없음, 절박함, 긴박함.
풍지박산	풍비박산 (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홀홀단신	혈혈단신 (孑孑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5)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공문서는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글이므로 바르고 부드러운 말, 쉽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제때) 했으면</li> <li>(2) 공작물의 소유자(所有者)나 몽리자(蒙利者) → 이득 보는 자</li> <li>(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 입힌 경우에</li> <li>(4) 경개(更改)로 인한 → 변경되어</li> <li>(5) 예타(豫妥) → 예비 타당성</li> <li>(6) 공종(工種) → 공사 종류</li> <li>(7) 이전용(移轉用) → 이용과 전용, 이용·전용</li> <li>(8) 기(既) 제시한 → 이미 제시한</li> </ol> |
|----------------------------------------------------------------------------------------------------------------------------------------------------------------------------------------------------------------------------------------------------------------------------------------------------------------------------------------------------|

특히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차별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음의 쌍을 이루는 예에서 왼쪽의 용어는 오른쪽의 용어로 바꾸어 쓰도록 해야 한다.

가정부·파출부/가사도우미	간호원/간호사
결손가정/한부모가정	귀머거리/청각장애인
노가다/일용직 건설노동자	미망인/ (고인인 ~의) 부인
미숙아/이른둥이	백수/취업준비자, 구직자
병어리/언어장애인	봉급/월급쟁이/봉급/월급생활자
신용불량자/금융채무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안내양/안내원	
안마사/수기사	
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에이즈환자/에이치아이브이(HIV)보균자/감염자	
잡상인/상인	집사람/아내
처녀 출전/첫 출전	처녀생식/단성생식
청소부/환경미화원	학부형/학부모

## ◆ 셋째 마당: 간결함

### 10. 간결하게

#### (1) 간결하게 하기

간결한 공문이 국민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점자와 수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공문서가 어렵고 번잡할 때 조사, 어미, 준말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 <1> 조사 활용하기

- (1)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흡결(欠缺)된 때에→사유로
- (2) 무상(無償)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授與)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은
- (3) 어느 행위에 있어서 거주소(假住所)를 정한 때에는 →행위에서
- (4)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때에만/때만
- (5)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이란
- (6) 인도(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때부터

## 〈2〉 어미 활용하기

- (1) ~ 쌍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여럿이면
- (2) ~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 (3)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 →인정되면
- (4)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서)
- (5)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혼인하려면

## 〈3〉 준말 활용하기

- (1) ……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그렇지(형용사 또는 상태를 지시할 때) 않으면/ 그러지(동사를 지시할 때) 않으면

## 〈4〉 기타 간결하게 표현하기

- (1)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가사(=집안일)나 기타 활동을 도와드리는
- (2)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보존하는 데 필요한
- (3-1) 출 간격은 130% ~ 160%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범위에서
- (3-2) 관할구역 내 기상관측 및 악기상 조기 감시→관할구역
-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득이하면
- (5)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승낙한
- (6)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해야
- (7)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되지 않으면
- (8)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 청구할 수 있다. →남으면, 부족하면
- (9) ~의 경우를 제하고는 ~에 신고하여야  
→~의 경우가 아니고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 외에는
- (10) 친족회가 행한 동의를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한

## 〈5〉 불필요한 성분 생략

- (1)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소급하지
- (2)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농공업에
- (3)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2조는
- (4) ~ 약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삭제) 배상하여야 한다.

## (2)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문장의 길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는 문장의 성격이나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글 안에서도 결론이나 주제를 압축하여 표현하거나 그 밖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할 때에는 짧게 쓰고, 예를 들거나 보충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보다 길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 [다듬은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

우리는 3.1 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한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



수하도록 한다.

그러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 수준을 골고루 향상시키고(또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 넷째 마당: 편안함

### 11. 편안하게

공문서는 편하고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 현행 공문서는 지나치게 붙여 쓰기, 어려운 용어 사용, 직역 투 표현, 상투적 표현, 명사형의 남발, 관형격 조사의 반복, 접속 부사의 오·남용, 지시어의 남용 등으로 관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편안하게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

#### (1) 편하게 하기

공문서는 독자가 편한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가려내고 문단 간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으며 전체 글의 요지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난삽한 외국어의 직역 투로 표현할 경우, 독자는 편안하게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1) 전(前)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의 규정에 따라/에 따라
- (2)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은 아니었으나
- (3) 개인보다는 소속단체에 대한 이해관계→소속 단체의
- (4) ~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원이 전원에게
- (5)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하는/ 담당하는/ 하는
- (6)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있는데도
- (7)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에서는/에는
- (8)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결의가 필요한
- (9)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소유자에게 가지를 없애달라고
- (10)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수요만큼
- (11) 청산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 여럿이면
- (12) 상당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제때) 했으면

## (2) 상투적으로 안 하기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까닭에 지나치게 낡아 버려 참신성이 떨어진 ‘상투어’를 사용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상투적인 표현은 글의 생기를 잃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표현에서 벗어나 좀 더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며 새로운 맛이 나는 표현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에게
- (2)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행위는
- (3)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을 말한다.→물건이란/물건은

## 맺는 말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은 모든 이가 보조와 보폭을 맞춰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이’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등 장애인들도 포함된다. 공문서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욱 반듯해지고 명료해지고 간결해지고 쉬워질 것이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소임은 모든 이가 글 읽기를 즐기게 하는 일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4),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_\_\_\_\_ (2010),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김문오(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김문오(2005), 좋은 글의 요건, 국립국어원.  
김희진(2008), 공문서의 모습과 보완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김희진(2008), 공문서 쓰기의 실제, 국립국어원.  
김희진(2009), 법령 문장 검토 의견, 입법 의견 제안서, 국회 법제실.  
김희진(2009), 법조문의 국어 순화, 국회사무처(강의록).  
김희진(2010), 의료인을 위한 우리글 바로 쓰기, 서울대 출판문화원.  
김희진·박용찬·변영수 외(2006), 잘 보이고 잘 들리는 법령문 쓰기, 한국법제연구원.  
박경현·민현식·이석주·이주행 외(2003) 고등학교 작문, 금성출판사.  
법제처(20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공공 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이 정 훈\_서강대학교 교수



# 공공 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이 정 훈\_서강대학교 교수

## 1. 조사 목적

- 현재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그래야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요소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이에 행정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지도를 파악하고, 행정 용어의 이해 용이성 및 사용 적절성, 공감성 등을 파악해 문제가 되는 용어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공공 언어와 공공 언어 정책이 지양해야 할 바와 지향해야 할 바를 밝히고자 함.

## 2. 조사 내용

-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함.
- 위 5개 기관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과 공지 사항, 정책 자료를 대상으로 행정 용어 수집
- 위 5개 기관에서 각 20개 항목씩 총 100 항목 선정 (난이도 고려)

<b>청와대</b>	중산층, 지역 발전,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 기초 생활 보장, 공공 부문, 녹색 성장 정책, 국민 행복 생활 공감 실천 대회, 영세 상인, 협력 이행, 저탄소 녹색 성장, 미소 재단, 주재, 전방위 외교, 마이크로 크레딧, 한·인도 CEPA 타결, 양형 기준, 추경, 국격, 휴면 예금 출연금, 5+2 광역 발전 모델.
------------	------------------------------------------------------------------------------------------------------------------------------------------------------------------------------------

<p><b>국무 총리실</b></p>	<p>알림 마당, 하수도 법 시행령, 위생원, 동일 원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전출 동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법 시행령, 2009년도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및 23개 연구 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주간 사업자 선정, 세종시 발전 방안, 국무총리실 복지 여성 정책 관 모집 공고, 소관 부처, 건설 산업 기본 법 시행령, 반신용 우편 엽서, 원안 검토안, 개방형 직위,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리 법 시행령, 조세 특례 제한 법, 철압인 날인 여부, 한시적 행정 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 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p>
<p><b>기획 재정부</b></p>	<p>직무 수행, 관련 서류, 이름 명기, 첨부, 수협중앙회, 기재, 확인 메일 송부, 농지 관리 기금, 차상위, 국가 정보 위원회, 총괄 계정, 송부, 예산 집행 실명제, 기금 조달 금리, 재정 조기 집행, 예수 금리, 중앙 관서, 공자 기금, 주무관, 통화 스왑.</p>
<p><b>외교 통상부</b></p>	<p>수행 역할, 컴퓨터 활용 능력, 협력 사업, 테러리즘, WTO 협정, 소속 장관, 초과 근무 수당, 산출 내역, 조약과 국제법,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직무급, 주재관 교육, 주재관 선발 제도, 재외 공관, 법무·법제, 의전 외빈 담당관실, 국제 경제국 심의관, 별정직 공무원,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소국.</p>
<p><b>행정 안전부</b></p>	<p>개별 통보, 채용 공고, 국제교류·협력, 출산휴가, 집수리 사업, 근로자, 취약계층, 주 계약자, 일자리 조성 사업, 인력 대체, 홍보 담당관실, 기획 재정 담당관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탈루, 공동 도급 제도, 관급공사, 전자관보, 공동 도급, 과밀 억제 권역, 양도 양수.</p>

□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실시.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선정된 행정 용어 100개에 대한 인지도 및 주관적 판단
- 나. 각 행정 용어에 대한 난이도(이해도) 및 공감도
- 다. 각 행정 용어에 대한 사용 적절성 및 대체 용어
- 라. 각 행정 용어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마. 행정 용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 3.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조사일 현재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일반 국민
조사 지역	■ 서울특별시
조사 방법	■ 1:1 개별 면접 조사
유효 표본	■ 총 700명
허용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pm 3.70\%p$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 할당 (2008년 12월 기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기준)
조사 기간	■ 2010년 2월 11일~18일
조사 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 4.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사례 수	%
전체		(700)	100.0
성	남성	(347)	49.6
	여성	(353)	50.4
연령	20대	(173)	24.7
	30대	(198)	28.3
	40대	(181)	25.9
	50대	(148)	21.1
권역	중부권	(62)	8.9
	동부권	(226)	32.3
	서부권	(157)	22.4
	남부권	(109)	15.6
	북부권	(146)	20.9
학력	중졸 이하	(8)	1.1
	공등학교 재학	(1)	0.1
	고졸	(317)	45.3
	대학교(전문대) 재학	(20)	2.9
	대졸(전문대 포함)	(348)	49.7
	대학원 재학(졸업포함) 이상	(6)	0.9
직업	전문직	(7)	1.0
	경영직	(11)	1.6
	사무관리직	(241)	34.4
	기술직	(63)	9.0
	생산직	(13)	1.9
	판매·서비스직	(106)	15.1
	자영업	(76)	10.9
	전업 주부	(175)	25.0
	무직	(8)	1.1

## 5. 조사 결과

### 5.1. 전반적 평가, 인지도, 난이도, 공감 정도 평가

□ 순위별 제시 (전반적 평가 기준)

	전반적 평가 (100점)	전반적 평가 (순위)	인지도 (100점)	인지도 (순위)	난이도 (100점)	난이도 (순위)	공감하는 정도 (100점)	공감하는 정도 (순위)
<b>전 체</b>	<b>55.61</b>	<b>.</b>	<b>42.37</b>	<b>.</b>	<b>49.32</b>	<b>.</b>	<b>49.44</b>	<b>.</b>
지역 발전	71.44	1	74.08	3	74.38	2	67.12	2
중산층	70.83	2	78.37	1	75.25	1	67.18	1
기초 생활 보장	68.67	3	68.1	6	69.56	6	64.85	6
컴퓨터 활용 능력	68.63	4	70.65	5	70.23	5	65.45	3
출산휴가	68.3	5	72.25	4	70.94	3	65.27	4
근로자	68.26	6	74.1	2	70.54	4	64.85	5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	66.57	7	51.49	30	61.79	17	58.63	21
초과 근무 수당	66.27	8	65.88	7	65.55	7	62.92	7
집수리 사업	66.23	9	56.88	21	64.09	12	62.28	8
협력 사업	65.76	10	56.76	22	62.44	16	59.5	16
일자리 조성 사업	65.5	11	58.85	16	63.52	13	60.9	11
공공 부문	65.26	12	56.25	24	60.78	21	59.29	17
수협중앙회	64.74	13	63.37	9	64.12	10	60.42	12
취약 계층	64.73	14	60.47	11	63.31	14	58.48	22
채용 공고	63.8	15	62.68	10	64.78	8	61.8	9
수행 역할	63.54	16	53.91	28	61.72	18	61.02	10
국제 교류, 협력	63.17	17	56.52	23	59.88	22	58.77	19
주 계약자	63.1	18	58.17	17	61.1	20	58.65	20
식품, 의약품 안전 정책 첨부	63.09	19	55.98	25	58.46	25	55.98	28
산출 내역	62.84	20	63.45	8	64.1	11	60.23	13
산출 내역	62.69	21	50.56	34	56.88	30	56.71	27
녹색 성장 정책	62.67	22	51.34	32	56.57	31	55.04	31
이름 명기	62.31	23	59.65	14	64.25	9	59.5	15
공정거래위원회	62.11	24	59.84	13	59.14	24	57.7	25
인력 대체	62.07	25	51.4	31	57.46	26	55.31	29
테러리즘	61.86	26	58.07	18	56.41	32	53.47	35
관련 서류	61.8	27	59.87	12	63.02	15	59.95	14
WTO 협정	61.44	28	52.98	29	51.8	38	52.41	39
개별 통보	61.37	29	57.57	19	61.22	19	58.86	18
소속 장관	61.1	30	54.29	26	56.22	33	55.2	30
영세 상인	60.84	31	58.95	15	59.68	23	57.72	24
기재	60.2	32	54.23	27	57.28	28	57.19	26

	전반적 평가 (100점)	전반적 평가 (순위)	인지도 (100점)	인지도 (순위)	난이도 (100점)	난이도 (순위)	공감하는 정도 (100점)	공감하는 정도 (순위)
확인메일송부	59.89	33	48.33	36	55.78	35	54.26	32
저탄소 녹색 성장	59.33	34	44.74	39	52.16	37	53.18	36
국가정보위원회	58.8	35	50.72	33	55.85	34	53.75	34
홍보담당관실	58.47	36	47.87	37	55.64	36	52.82	38
품목별 원산지 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58.39	37	44.55	40	51.78	39	50.87	41
직무 수행	58.21	38	57.35	20	57.43	27	58.05	23
국민행복생활공감 실천 대회	58.14	39	31.02	74	49.28	44	49.13	43
협력 이행	57.54	40	39	49	51.04	40	51.37	40
조약과 국제법	57.27	41	37.32	54	44.59	58	48.19	47
농지관리기금	57.14	42	38.54	50	48.06	48	48.37	46
알림 마당	57.13	43	44.02	41	56.92	29	54	33
기획재정담당관실	56.64	44	42.81	43	49.55	43	48.57	44
차상위	55.84	45	46.78	38	45.94	53	47.01	54
하수도법 시행령	55.61	46	33.77	64	49.63	42	48.09	50
전출 동의	55.39	47	37.83	53	47.75	49	46.94	55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54.97	48	40.42	46	49.25	45	46.34	59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54.27	49	41.29	44	47.51	50	46.72	56
예산 집행 실명제	54.23	50	37.95	51	46.4	52	48.1	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53.87	51	32.23	72	45.87	54	48.51	45
국무총리실 복지 여성 정책관 모집 공고	53.8	52	25.16	90	49.25	46	53.07	37
미소 재단	53.7	53	33.11	70	44.59	57	47.04	53
송부	53.64	54	43.31	42	48.49	47	49.85	42
직무급	53.31	55	36.53	56	44.29	60	46.51	58
세종시 발전 방안	53.26	56	49.84	35	49.93	41	46.6	57
법무, 법제	53.23	57	37.93	52	44.44	59	45.92	60
소관 부처	53.14	58	39.47	48	45.68	55	48.1	48
기금 조달 금리	52.93	59	33.35	68	42.66	65	43.58	72
위생원	52.87	60	33.96	63	46.99	51	45.84	61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52.84	61	29.86	79	40.18	80	44.65	63
재정 조기 집행	52.6	62	34.92	60	42.1	70	44.6	66

	전반적 평가 (100점)	전반적 평가 (순위)	인지도 (100점)	인지도 (순위)	난이도 (100점)	난이도 (순위)	공감하는 정도 (100점)	공감하는 정도 (순위)
총괄 계정	52.39	63	33.45	67	42.07	71	44.53	67
재외 공관	52.39	63	36.51	57	42.86	63	44.64	65
별정직 공무원	52.09	65	40.82	45	43.25	61	45.03	62
주재관 교육	51.91	66	30.95	75	42.34	67	44.51	68
반신용 우편엽서	51.79	67	30.34	77	43.14	62	47.7	52
원안 검토안	51.76	68	33.21	69	44.98	56	48.06	51
주재관 선발 제도	51.37	69	29.48	82	41.15	75	42.4	76
조세 특례 제한 법	51.31	70	34.87	61	40.56	76	44.4	69
주재	51.23	71	35.86	59	42.59	66	43.82	71
의전 외빈 담당관실	51.13	72	32.46	71	42.28	68	44.17	70
전방위 외교	50.59	73	32.2	73	39.25	83	41.96	80
국제 경제국 심의관	50.43	74	25.41	88	38.34	86	42.39	7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50.4	75	26.86	85	40.31	78	44.65	64
개방형 직위	49.99	76	25.78	87	38.42	85	42.86	75
탈루	49.96	77	39.77	47	42.7	64	42.07	78
제소국	49.77	78	29.16	83	38.44	84	40.67	85
공동 도급 제도	49.49	79	30.11	78	40.16	81	41.27	83
관급공사	49.44	80	36.48	58	41.88	72	41.59	82
동일 원판	49.2	81	25.03	91	40.51	77	41.2	84
과밀 역제 권역	49.2	81	33.56	65	40.2	79	41.94	81
중앙 관서	48.94	83	34.09	62	41.78	73	43.47	73
휴면 예금 출연금	48.84	84	33.47	66	42.23	69	43.3	74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 기관 고객 만족	48.79	85	24.49	93	39.45	82	39.99	86
양도 양수	48.76	86	37.05	55	41.77	74	41.98	79
전자 관보	47.53	87	30.44	76	37.59	87	38.57	89
공동 도급	47.37	88	29.63	81	36.82	88	38.72	88
예수 금리	47.33	89	26.52	86	36.53	89	39	87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45.43	90	22.06	97	33.15	95	38.02	91
공자기금	45.13	91	24.87	92	35.84	90	37.23	95
한·인도 CEPA 타결	44.46	92	23.04	95	34.11	93	37.23	96

	전반적 평가 (100점)	전반적 평가 (순위)	인지도 (100점)	인지도 (순위)	난이도 (100점)	난이도 (순위)	공감하는 정도 (100점)	공감하는 정도 (순위)
국격	44.46	92	25.18	89	33.99	94	38.25	90
추경	44.3	94	29.66	80	35.26	92	37.64	92
마이크로 크레딧	44.09	95	22.45	96	31.92	97	36.37	97
주무관	43.93	96	27.78	84	35.77	91	37.4	94
철압인 날인 여부	43.64	97	18.55	99	30.29	99	35.47	99
5+2 광역 발전 모델	42.99	98	18.31	100	33.05	96	37.63	93
양형 기준	41.76	99	21.94	98	31.44	98	35.8	98
통화 스왑	39.79	100	24.49	93	29.67	100	35.04	100

- 전반적 평가(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55.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71.44점(중산층), 가장 낮은 점수는 39.79점(통화 스왑)을 기록하였음.
- 인지도, 난이도, 공감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50점 이하임.
- 점수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 차원과 상대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함. 예를 들어 50점이 절대적 차원에서는 낮은 점수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 차원에서는 (다른 국가의 공공 언어 점수와 비교해 보면) 높은 점수로 평가될 수도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 언어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함.
- 전반적 평가와 인지도, 난이도, 공감하는 정도 평가가 비교적 비례함.

[참고] 전반적 평가 91위-100위의 행정 용어는 인지도, 난이도, 공감하는 정도에서도 90위 밖의 평가를 받음.

## 5.2. 행정 용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 행정 용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단위: %)

	사례 수	1순위						1+2+3순위							
		간결성	대중성 (공공성)	친숙함	명확성	흥미성	전달 용이성	간결성	대중성 (공공성)	친숙함	명확성	흥미성	전달 용이성	기타	
전체	(700)	14.7	29.0	18.9	15.3	1.4	20.7	47.7	72.7	56.1	52.3	12.3	57.9	0.29	
성	남성	(347)	14.1	31.1	18.7	15.6	1.7	18.7	48.7	72.0	55.6	51.6	12.7	58.5	0.29
	여성	(353)	15.3	26.9	19.0	15.0	1.1	22.7	46.7	73.4	56.7	53.0	11.9	57.2	0.28
연령	20대	(173)	12.1	34.7	16.8	13.3	2.3	20.8	43.9	72.3	59.0	55.5	12.1	56.1	0.00
	30대	(198)	13.1	25.3	21.2	18.2	0.5	21.7	49.5	72.2	56.6	50.0	13.1	56.6	1.01
	40대	(181)	13.8	27.1	17.1	16.6	1.1	24.3	43.6	75.7	50.8	56.4	11.0	62.4	0.00
	50대	(148)	20.9	29.7	20.3	12.2	2.0	14.9	54.7	70.3	58.8	46.6	12.8	56.1	0.00
직업	중부권	(62)	11.3	21.0	25.8	21.0	0.0	21.0	37.1	77.4	59.7	48.4	8.1	69.4	0.00
	동부권	(226)	13.3	31.4	24.8	14.2	2.2	14.2	51.3	71.2	62.4	45.1	23.9	44.7	0.00
	서부권	(157)	14.6	33.8	15.3	14.6	1.9	19.7	53.5	69.4	53.5	54.8	4.5	63.7	0.00
	남부권	(109)	22.0	24.8	22.9	12.8	1.8	15.6	59.6	67.9	66.1	39.4	16.5	47.7	1.83
	북부권	(146)	13.0	26.7	7.5	17.1	0.0	35.6	31.5	80.1	40.4	71.9	1.4	74.7	0.00

- 1순위 종합, 1~3 순위 종합 모두 요건의 우선 순위가 같음.

대중성 > 전달 용이성 > 친숙함 > 명확성 > 간결성 > 흥미성

## 6. 논 의

### 6.1. 행정 용어의 지향점과 지양점

□ 지향해야 할 공공 언어의 특성

특 성	예
일상 용어	지역 발전, 출산휴가, 근로자, 중산층, 컴퓨터 활용 능력
짧고 간결한 용어	첨부, 기재, 공공 부문, 협력 사업, 관련 서류
의미가 명확한 용어	지역 발전, 근로자, 첨부, 산출 내역, 국제 교류 협력
고유어를 활용한 용어	알림 마당, 집수리 사업, 일자리 조성 사업

□ 지양해야 할 공공 언어의 특성

특 성	예
비일상 용어	예수 금리, 공자기금, 주무관, 철압인 날인 여부, 반신용 우편엽서, 제소국
길고 간결하지 않은 용어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 기관 고객 만족, 한시적 행정규제유예 등을 위한 건축 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국무총리실 복지 여성 정책관 모집 공고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개방형 직위, 위생원, 과밀억제권역, 국제 경제국 심의관, 기금조달 금리, 재외 공관, 의전 외빈 담당관실, 휴면 예금 출연금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를 활용한 용어	마이크로 크레딧, 통화스왑, 한,인도 CEPA 타겟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를 활용한 용어	공동도급, 양도양수, 별정직 공무원, 총괄계정, 한·인도포괄적경제 동반자 협정

[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의 정비 기본 원칙

- 가. 쉬운 법령: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나.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다.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 라.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6.2.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대안 모색

□ 낮은 순위의 행정 용어에 대한 대안을 설문으로 파악한 결과 대부분 대안이 되는 용어를 제시하지 못함.

(예) 관급 공사

- 순위에서 80등이므로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 용어
- 대안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97.2%
- 대안으로 나온 것은 ‘기관 공사, 공공사업, 나라 공사, 조달청’

□ 이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행정 용어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용어를 고안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그렇다고 전문가가 대안 용어를 제시해도 그 용어 또한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우리말의 어휘에서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과 개념어는 한자어가 대다수라는 점에 유념해야 함.

□ 따라서 대안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첫째, 대안 용어 마련 : 가급적 고유어를 쓰고, 한자어를 쓰는 경우에도 비교적 쉬운 한자어를 써서 대안 용어를 마련해야 함.

- ① 대안이 필요한 행정 용어 선정
- ② 전문가 집단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대안 용어 제시
- ③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된 대안 용어 중 일부 선별
- ④ 선별된 대안 용어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
- ⑤ 대안 용어 확정

[참고]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http://www.malteo.net>)

(예) 아이젠(eisen) → 눈길덧신,

리콜(recall) → 결함보상(제)

둘째, 행정 용어 사전 보급 : 어려운 행정 용어는 피할 수 없음. 어려운 행정 용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면 온라인 행정 용어 사전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행정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특 강 】

## 한 수준 높은 공공 언어를 위하여

박 장 원\_국어문화원연합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특 강 】

# 한 수준 높은 공공 언어를 위하여

박 장 원\_국어문화원연합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1. 들머리

본고의 기본적인 시각은 “언어의 사용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자의 사용은 인간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것이다.

### 1.1. 문제의 제기

언어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언어 정책은 국가의 흥망을 좌지우지 하기도 하고, 언어의 사용은 인간의 품위를 결정하게 한다.

- |                         |                      |
|-------------------------|----------------------|
| 1. 언어와 사고, 문자와 문명의 관계   | 2. 강희자전과 청나라의 언어정책   |
| 3. 훈민정음의 창제와 IT 산업      | 4. 5공 청문회 <거짓말>과 장○○ |
| 5. 여야 정당 대변인<막말>의 정치 생명 |                      |
- \* ‘재미보았다’와 ‘눔현스럽다’

### 1.2. 언어의 세 가지 다른 역할

1. 생존권으로서의 언어
2. 참살이권으로서의 언어
3. 경제력으로서의 언어

## 2. 공공 언어의 중요성

### 2.1. 언어와 정신작용의 관계

- 언어는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

### 2.2. 언어와 문화의 관계

- 언어는 문화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2.3. 언어 공동체란?

언어 공동체는 “언어를 수행하고 해석하는 데 같은 규칙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 변이를 공유하는 집단”

### 2.4. 결 론

공공 언어는 공무 수행의 소통과 효용을 결정한다. - 공공 기관의 사고(혹은 지식) 수준과 내용을 나타내고, 그 집단의 문화적 관행이나 수준을 나타내는 동시에, 소통되는 대중의 범위를 결정하게 한다.

## 3. 개념과 대상(내포와 외연)

### 3.1. 공공 언어의 요건

〈외적 요건〉

- 1) 화자의 공개성
- 2) 청자의 비제한성

- 3) 환경과 상황의 공공성
- 4) 내용과 형식의 대중성

#### 〈내적 요건〉

- 1) 내용의 충실성과 정보성(가치성)
- 2) 문장 형식의 정확성과 문법성
- 3) 표현 방식의 다양성 및 창의성 대 획일성 및 투명성
- 4) 화자의 품위성과 교양성

### 3.2. 공공 언어의 외연

정부 기관의 공공 언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언어  
 검색 엔진 등 공용 인터넷의 언어  
 TV 등 방송 매체의 구어와 자막을 포함한 언어  
 신문 및 대중 잡지 등의 광고문을 포함한 언어  
 문화재 안내판 등을 포함한 관광 안내문  
 대중이 활용하는 개인 상호들의 안내문

### 3.3. 공공 언어의 요건

- 1) 정확성 :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 3) 용이성 : 쉬운 단어로 수신자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4) 객관성 : 문서 작성자의 개인적인 감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5) 품격성 :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정도가 되어야 한다.
- 6) 경제성 :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본 지식

### 4.1. 과학성

#### 1) 구체성

한 편의 글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실질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같은 분야나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내포나 외연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창의성

한 편의 글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작성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3) 검증 가능성

한 편의 글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자료나 해결 방식, 결론 등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4) 효용성

한 편의 글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새로운 정보가 그 학문 분야나 인접 학문 분야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 4.2. 진술 방식

#### 1) 설명

#### 2) 논증

#### 3) 묘사

#### 4) 서사

### 4.3. 문체

- 1) 간결체: 문장을 짧게 끊어 간결하게 표현한 문체(↔만연체)
- 2) 만연체: 섬세한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여 문장을 길게 쓴 문체
- 3) 강건체: 말하는 투가 굳세고 강하여 호소력이 느껴지는 문체 (↔우유체)
- 4) 우유체: 말하는 투가 부드럽고 온화하여 다정하게 느껴지는 문체
- 5) 화려체: 아름다운 말과 음악적인 리듬, 색채감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꾸미는 말을 사용하여 글을 화려하게 쓴 문체. (↔건조체)
- 6) 건조체: 문장에서 꾸미는 말을 없애고,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쓴 문체.
- 7) 문어체: 일상의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글에서만 쓰이는 점잖고 예스러운 문체.(↔구어체)
- 8) 구어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문장에 사용한 문체

## 5. 역기능적 공공 언어

### 5.1. 비문법적인 문장의 표출

특정한 공공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비율을 측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http://www.munjang.net>에서 옮김〉

2008년 9월 19일자 청와대 알림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2009년도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은 청와대에서 만드는 어린이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 4, 5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1,000명을 선발합니다.

단,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추천을 거쳐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많은 학교와 어린이에게 참여기회를 주고자 학교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이 문장에서 ‘청와대에서 만드는’ 것은 ‘어린이 인터넷 신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이라는 동사를 그냥 사용하고 싶으면 ‘어린이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 고치면 될 것입니다. 조사 ‘의’를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인터넷 신문 기자’를 그냥 사용하고 싶으면 ‘만드는’을 ‘양성하는’으로 고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학교별로’가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추천을 거쳐’ ‘선착순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대단히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렸네요.

## 5.2. 소통이 불가능한 용어의 범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약관, 법조문 등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예) 5+2 광역 발전 모델, 마이크로 크레딧, 통화 스왑

(예) 5가지 주요 추진방향은, ▶ ‘피로도시스템’ 도입 확대, ▶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 게임과몰입 대응TF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의 현재의 10배 수준 증액 추진 등이다

- 2009년 :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정부의 5개 부처/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의 공공언어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지도 조사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평가 점수는 55.61점이었음.

## 5.3. 그 외 공공 언어의 다양한 양상

- 1) 거짓말
- 2) 애매한 말
- 3) 막말
- 4) 불성실한 말



## 6. 품격 있는 공공 언어

### 6.1. 발상의 전환과 문제의 제기

#### 1) 발상의 전환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 2) 문제의 제기

축적된 지식의 당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보자.

### 6.2. 내용의 참신성

#### 1) 발전된 내용

장점은 보완하고, 단점은 수정하여 발전시켜 연속적인 면을 가지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의 사업을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아주 조심해야 한다.

#### 2) 새로운 내용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사업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처의 성격에 합당해서 부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 6.3. 문장의 문법성 - 문장 성분의 호응과 균형

#### 1) 문장 성분의 호응

①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인데, 문장에서 어떠한 성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문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서술어의 종류와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문장 성분의 호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다.

- 지치신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가는 바늘에 꿰어 한 땀 한 땀 새 옷을 지으시곤 했다.
-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생활속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2) 문장 구조의 호응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될 때에는 유사한 구조나 대조적인 구조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다른 문장 구조가 연결되는 것은 문장을 어색하게 하거나 문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 그러한 부정적 측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하며, 행정 과정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 3) 수식 관계나 부정 관계의 명확

문장 안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명확한 지시 관계나 수식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문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배하지 않았다.

## 4) 명제 간의 관계가 분명한 접속

두 개 이상의 문장이나 명제를 연결할 경우에는 그것들의 관계가 연결 어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연결 어미의 용법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한다. 연결 어미를 사용한다. 명제 간의 관계가 드러난다.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
- ⇒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명제 간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해야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

## 5)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나열

동일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여 나열하면 문장성분의 공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공유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하늘과 땅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
- 과도한 두뇌 사용과 절대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진하는 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정말 감당하기 벅찰 것입니다.

#### 6.4. 어휘의 적절성과 품격성

##### 1)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한다.

어떤 사물이나 사상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는 하나뿐이다.

##### 2) 적절하지 못한 어휘, 불필요한 반복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대낮에 남의 집을 털던 도둑이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잡히는 비운을 맞게 된다.
- 어릴 때 두 개 국어 이상을 배우면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헛소리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망언이다.
- 지금 내가 개탄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신세대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3) 품위있는 어휘를 선택한다. - 쉽고 교양있는 어휘 :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 막말로 맨 헛소리만 해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어 볼까

##### ① 한자어나 외국어는 수용하고 변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우리의 고유어를 밀어내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레스토랑과 식당과 밥집
- Rest Room, W.C., 화장실, 변소, 뒷간

##### ② 어려운 한자어나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 된다.

- 이와 같은 지의는 나변에 있는 것인지 ⇒ ~ 속셈은 어디에 있는지
-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태클하여 ⇒ ~ 쟁점으로 끌여 들어

## 6.5. 화법의 교양성

화법이란 말과 글을 잘 지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라서 이지러짐 없이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글은 또 말을 닦는 기계라서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진다.”(주시경)

- 1) 경어법의 적절한 사용
- 2) 지칭어, 호칭어의 적절한 사용 - 표준화법을 익히자
- 3) 공손하고 예의바른 어투 - 보험설계사의 화법을 배우자.
- 4) 청자의 문화에 호응하는 화법(?) -

전달 관점이나 의미 교환의 관점이 아니라, 의미 교섭과 협상의 관점에서 공공언어를 사용하자.

## 6.6. 기타

- 1) 어문 규범 등에 유의한다.

띄어쓰기는 도로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 ① 두 마리만이천원
- ② 아까운여자
- ③ 이와 같은 데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데 이유가 있다.

- 2) 진술 방식은 ‘설명’의 방식을 취하되,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 3) 문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처나 기관의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 4) 속담과 고사성어의 활용은 어떠할까? - 문어와 구어의 차이

## 7. 마무리를 대신하여

문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진술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서 취해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고민의 과정 그 자체이다.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역시 고민의 과정 그 자체이다. 고민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하라.

둘째, 집착하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셋째,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너무나 당연한 조건들이지만, 약간씩만 부연하기로 하자. 인간이 타고난 능력의 차이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이 말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는 한 개인이 하나의 일에 얼마나 집중하여 탐구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꾸준히 하나의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적어도 그 일에 관한 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는, 정신을 집중시키면 인간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나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하는 일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과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은 아마 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 아마도 거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때 지켜야 할 사항은 집중은 하되 지나치게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주장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물이나 존재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이다. 또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생각이 앞서서 어깨에 힘을 지나치게 주면 헛방망이질을 하게 되듯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 욕심이 앞서게 되면 논지의 비약이 생겨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나 논지의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마 문제로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 가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문제를 잠시 무의식의 세계에 넘겨 두고, 의식의 세계에서는 휴식을 취하든가 딴 일을 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그 냄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그 곳과 다른 곳의 차이를 망각해 버리듯이, 인간의 인식도 하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전체와 부분의 구분을 잊어버리게 되어 오히려 혼돈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잠시 잊어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제삼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구름 사이로 언뜻 스쳐가는 햇살 같은 광명을 구하는 행운을 가질 수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활용하기

김 한 샘\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표준국어대사전 활용하기

김 한 샘\_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종이에 인쇄된 사전은 재판을 인쇄하기 전에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인터넷,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변화와 생성을 10년에 한두 번 개정하는 종이 사전에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는 사전에 최신의 정보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판은 과감하게 사전 콘텐츠 전달 형식을 ‘웹 사전’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웹 사전’은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전을 말한다. 이미 《표준국어대사전》 또한 2002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종이 사전을 인터넷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사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전을 웹 사전으로 편찬한다는 것은 사전 편찬과 사용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표준국어대사전》을 웹 사전으로 편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전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전의 정보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한 다른 국어사전이 다수 출간되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 또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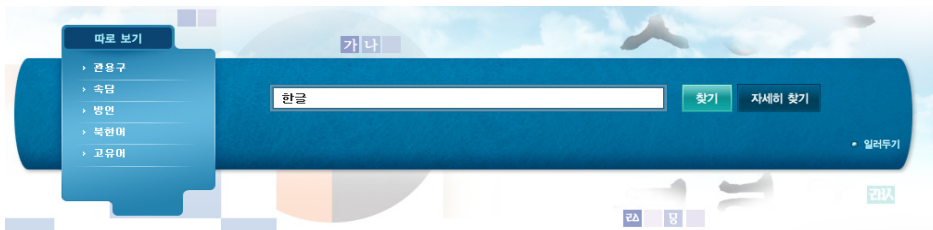
웹 사전으로 형식을 바꾸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을 개편하고 상세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용 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웹 환경을 살려 인터넷만 연결되면 국립국어원 누리집 접속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의 자세한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검색 방식의 다양화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에서는 단순 검색 기능만 제공했던 반면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찾기, 따로 보기, 자세히 찾기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기본 검색 기능인 ‘찾기’와 사전 내용을 부문별로 따로 볼 수 있는 ‘따로 보기’, 상세한 조건을 설정하여 세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세히 찾기’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 검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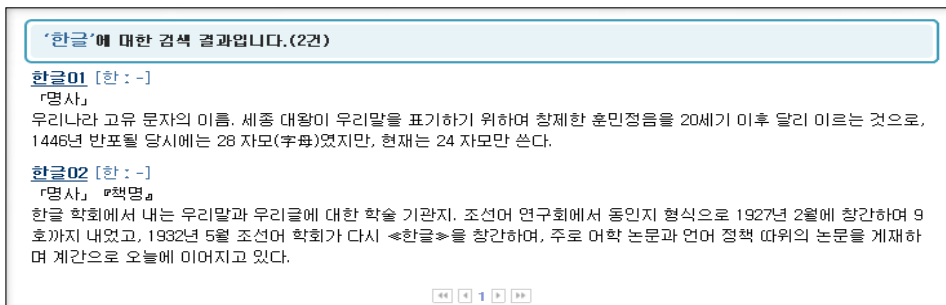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기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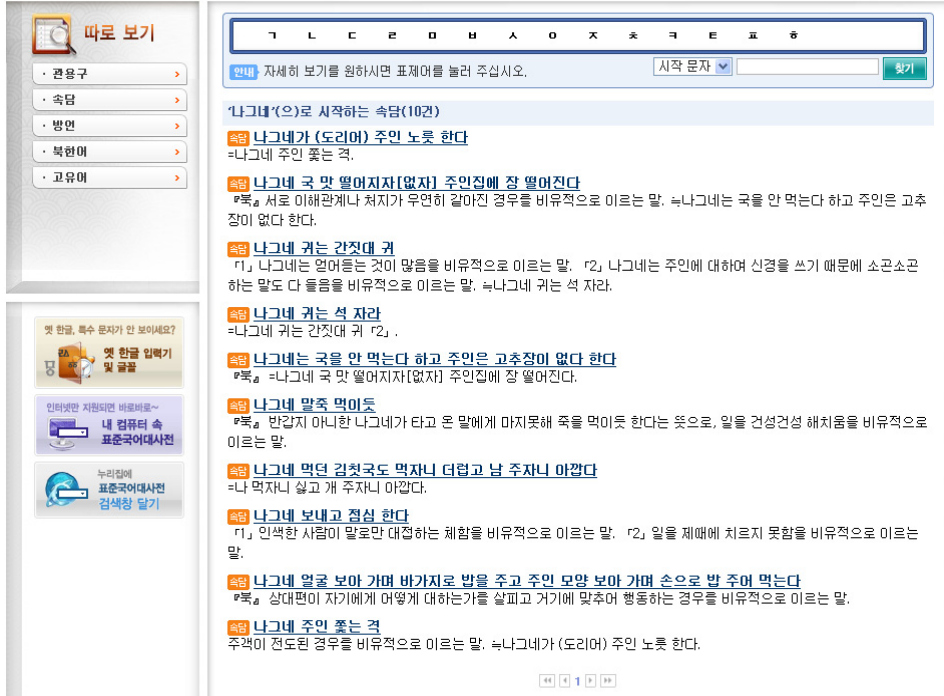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찾기’ 화면>

🔍 검색 조건 1: 표제어 ‘한글’ 찾기



<검색 조건 1을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따로 보기’ 결과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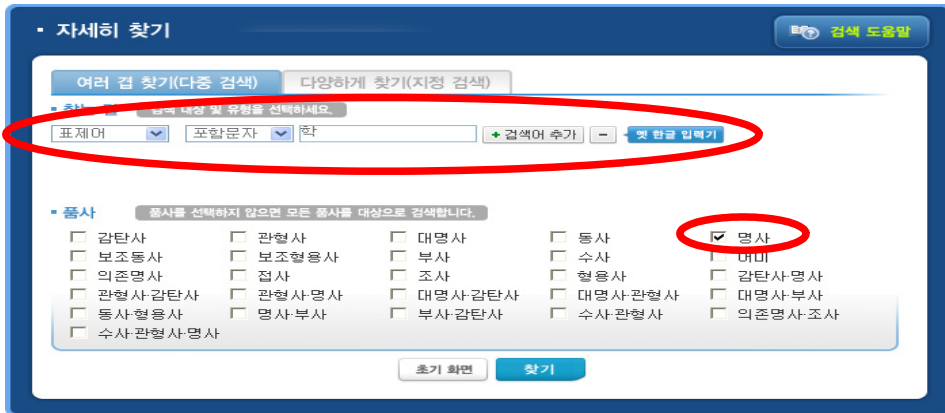
🔍 검색 조건 2: 속담 중 ‘나그네’로 시작하는 속담 찾기

## 2. 검색 조건의 정교화

‘자세히 찾기’ 기능은 다시 ‘여러 겹 찾기(다중 검색)’와 ‘다양하게 찾기(지정 검색)’로 세분화하여 원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검색할 수 있다. ‘여러 겹 찾기(다중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 미시 구조와 관련된 조건을 세 가지까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간추려 낼 수 있으며 ‘다양하게 찾기(지정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의 거시 구조와 관련된 조건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간추려 낼 수 있다.

정교화된 검색 조건은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다양한 국어학 연구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더 많은 사용자가 안정되게 웹 사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세밀한 정보를 원하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정규 표현 검색을 구

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여러 겹 찾기’ 화면 >

ㄹ 검색 조건 3: ‘학’을 포함하는 명사 표제어 찾기

**‘학’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499건)**

**가격제정학** (價格制定學)  
 「명사」 『북한어』 『경제』  
 가격을 정하는 데 이용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가공공정공학** (加工工程工學)  
 「명사」 『북한어』 『공업』  
 가공 공정을 새로 연구하여 설계하고 발전시키며, 그 공정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공학.

**가극문학** (歌劇文學)  
 「명사」 『북한어』 『음악』  
 가극 대본의 북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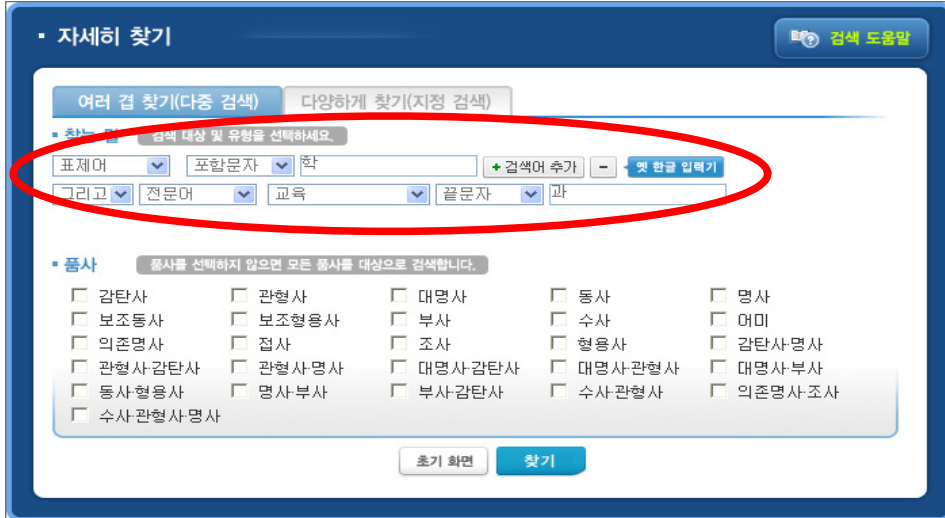
**가금공학** (家禽工學)  
 「명사」 『북한어』 『농업』  
 축산학의 한 분야.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알이나 고기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가금-학** (家禽學) [가금학만[--학-]]  
 「명사」 『농업』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고, 사육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가스지구화학이상마당** (gas地球化學異狀--)  
 「명사」 『북한어』 『광업』  
 =대기지구화학이상마당.

**가스지구화학탐사** (gas地球化學探査)  
 「명사」 『북한어』 『광업』  
 =대기지구화학탐사.

<검색 조건 3을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여러 겹 찾기’ 화면 >

ㄹ 검색 조건 4: ‘학’을 포함하는 교육 분야 전문어 중 ‘과’로 끝나는 용어 찾기

**‘다중검색 조건’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8건)**

**기본^학과** (基本學科)  
 『교육』  
 여러 학과의 기본이 되는 학과. 초등학교 교육에서 국어, 수학 따위이다.

**대학^예과** (大學豫科)  
 『교육』  
 예전에, 대학에서 학부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던 예비 과정. 수업 연한은 2년이었다.

**중학-과** (中學科)[-과]  
 『명사』 『교육』  
 여러 과정이 함께 있는 학교에서 중학 과정을 교수하는 과. ≒중학부.

**특성화 학과** (特性化學科)  
 『교육』  
 실업계 학과 가운데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학과.

**학과1** (學科)[-과]  
 『명사』 『교육』  
 교수 또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학술의 분과.

**학과2** (學課)[-과]  
 『명사』 『교육』  
 학문이나 학교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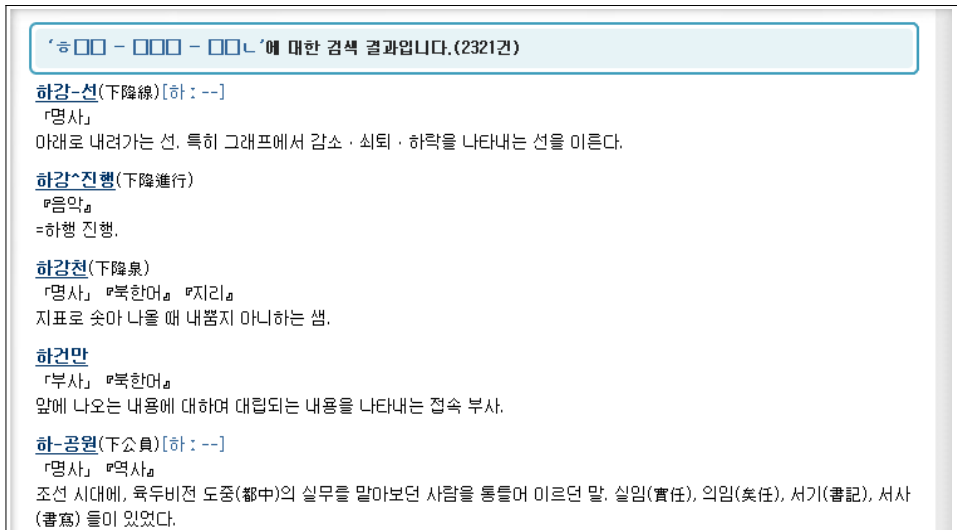
**학무-과** (學務課)[학-과]  
 『명사』 『교육』  
 학사에 관한 사무를 맡은 과.

<검색 조건 4를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다양하게 찾기'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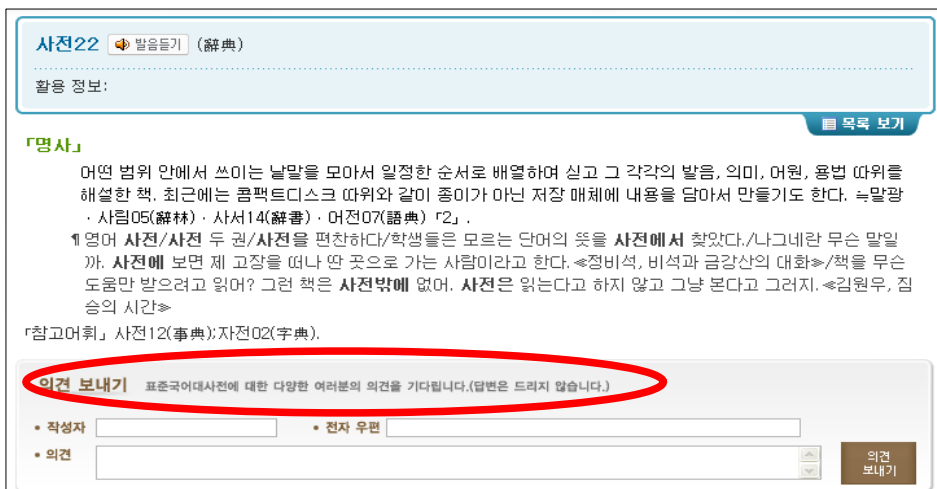
ㄹ 검색 조건 5: 첫 글자 초성이 'ㅎ', 셋째 글자 종성이 'ㄴ'인 표제어 찾기



<검색 조건 5를 적용하여 찾은 결과 화면 >

### 3.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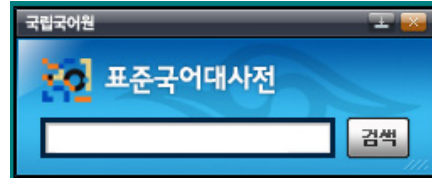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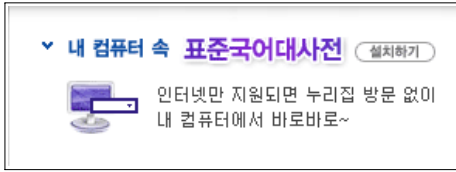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에서는 ‘의견 보내기’를 통해 사용자 의견 접수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그친 반면 개정판의 웹 사전에서는 사전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편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편찬자는 사전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기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전 편찬 과정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의견 보내기’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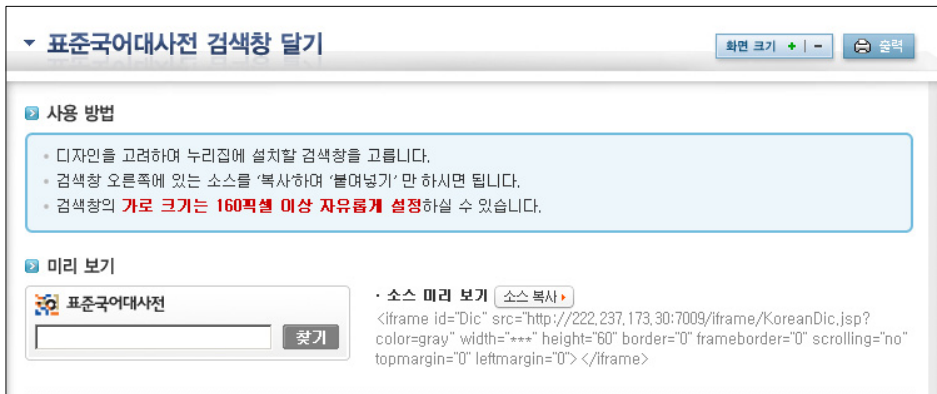
### 4.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에서는 일반적인 웹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 기능을 구현해 사용자의 사전 사용을 돕고자 했다.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지원되면 작은 사전 창을 통해 사전 정보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소위 위젯(widget)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 설치 화면>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

‘내 컴퓨터 속 《표준국어대사전》이 사전 사용과 관련한 것이라면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 달기’ 기능은 사전 기능 제공과 관련한 것이다.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사전 검색 기능이 필요할 때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창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개방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창 달기’ 화면>

위와 같이 대폭 달라진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의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표이다. 검색 기능 면에서 주제별, 품사별, 자모별, 자소별 검색이 추가되었고 검색 조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내용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용자 환경의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웹 환경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



<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1999와 2008 비교 >

대항목	소항목	1999	2008
검색 기능	표제어 찾기	○	○
	아무개 문자(?, *) 활용 찾기	×	○
	따로 보기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	×	○
	여러 겹 찾기 (검색 조건 중복 적용)	×	○
	품사별 찾기	×	○
	자모별 찾기	×	○
	범위로 찾기	×	○
	자소로 찾기	×	○
사용자 환경	일러두기	○	○
	옛 한글 입력	○	○
	사용자 의견 수렴	×	○
	소형 사전 창 설치(위젯 기능)	×	○
	개방 운영 프로그램 제공	×	○



#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책임관 제도

최 용 기\_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책임관 제도

최 용 기\_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 1.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의의

### 1.1. 국어기본법의 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어와 관련된 법률은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도에 폐지되었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이전 시대에 현재의 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법령 중에 주요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법령 검색 시스템(<http://www.klaw.go.kr/>)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948. 10. 9.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2005. 1. 27. 폐지)	
1953. 7. 7.	○ 국어심의위원회 규정(문교부령, 1964. 11. 10. 폐지)	
1964. 11. 10.	○ 국어심의회 규정(대통령령, 1995. 7. 13. 폐지)	
1965. 5. 6.	○ 한글 전용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훈령, 관보 누락)	
1968. 11. 5.	○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978. 11. 27. 폐지)	
1968. 12. 24.	○ 한글 전용(국무총리 훈령, 1991. 12. 31. 폐지)	
1976. 8. 4.	○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대통령령, 1983. 12. 30. 폐지)	
1990. 11. 14.	○ 국립국어연구원 직제(대통령령)	
1991. 2. 1.	○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폐지 →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994. 12. 16.	○ 한국문화예술진흥법 개정(국어의 발전 및 보급, 추가)	
2005. 1. 27.	○ 국어기본법 제정(법률 제7368호)	

위의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까지 개정 없이 지속되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제정 1948. 10. 9. 법률 제6호]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제6호, 1948. 10.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어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의 언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sup>5)</sup> 아래는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다.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한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을 하고 어문 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5) <http://www.assembly.go.kr>: 국어기본법 제안 이유

- 라.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한다.
- 마.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 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한다.

## 1.2.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중에 주요한 내용을 발췌한 조항들이다. 제2조는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10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을, 제14조는 공문서의 작성을, 제17조는 전문용어 표준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li> <li>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li> <li>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li> </ol>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p>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p> <p>4. 삭제 &lt;2009. 3. 18.&gt;</p> <p>5. “국어 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li> <li>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li> <li>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li> <li>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li> </ol> <p>③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p>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p>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lt;개정 2009. 3. 18.&gt;</p> <p>②공공 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 3. 18.&gt;</p>	<p>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어렵거나 낱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 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②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 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gt;</p>

### 1.3. 국어기본법 제정의 의의

국어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국어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아 놓았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몇 가지 새로 마련되었다. 전에 있던 제도라도 국어기본법에서는 종전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히 바뀐 것이 있다.

새로운 제도로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책임지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 점,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게 한 점, 국민의 국어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국어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점, 그 밖에 국민이 전문 용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국어 발전 계획은 종전의 한국문화예술진흥법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종전에는 선언적인 조항에 그쳤던 반면에 국어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년마다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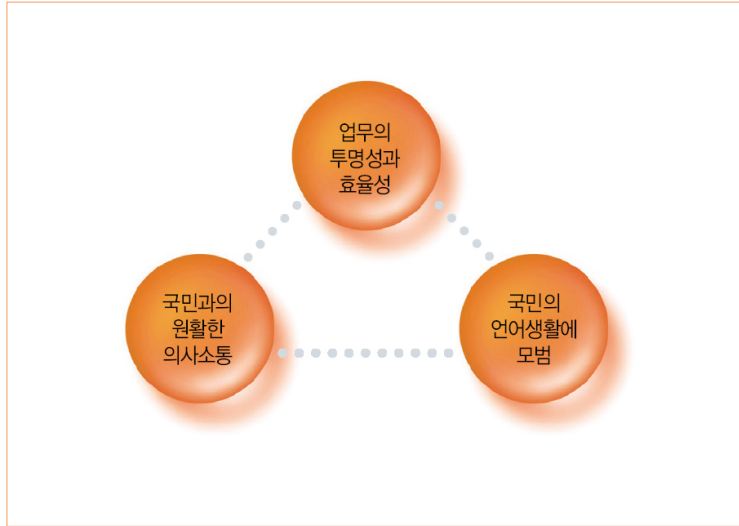
국어기본법은 이처럼 새로운 제도 신설과 종전 내용을 분명히 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책임관’도 부가적인 업무인지 독립된 업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도 해당 부처의 전문 용어의 범위가 불확실하므로 따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 부처 간 협의회도 구성되어 활동해야 한다.

## 2. 국어책임관 제도와 그 역할

### 2.1. 국어책임관 제도의 필요성

공공 기관의 언어 사용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법령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제정된 법령이나 수립된 정책이 국민에게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문

장은 일반 대중에게 하나의 모범 또는 전범으로 인식되므로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  
 예) 자본금이 미달되(→ 미달돼) (OO시 고시 제OO호)  
 공동주택부지를 조성코저(→ 조성하고자) (OO시 고시 제OO호)
- 어법에 어긋난 표현의 사용  
 예) 신종플루 감염으로 보여짐(→ 보임) (OO부 공문)  
 원형 보존이 불가함으로(→ 불가하므로) (OO부 고시 제OO호)
- 자연스럽지 않은 문체의 사용  
 예) 미검인으로 인하여(→검인을 받지 않아) 직권 말소(OO청 공고 제OO호)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적합할 것) (OO부 고시 제OO호)
-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일본어 투)의 사용  
 예) 종점부 가각(→ 길모퉁이) 확장 (OO시 고시 제OO호)  
 환경관리과에 비치된 구매 시방서(→ 구매 설명서) (OO시 고시 제OO호)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태만히 하거나)(OO부 공고 제OO호)

- 무분별한 외국어의 남용, 외계어 사용
  - 예) Clean 공직 사회, Clean 사회 만들기 (OO부 누리집)
  - 그린투어리즘 (OO도 관광 안내 사이트)
  - 중소氣UP(OO 방송 생방송), 내가GREEN희망JOB氣(OO부 누리집)
  - 시프트(SHIFT) 정책(OO시 누리집)

위와 같은 오남용 사례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둘째, 공공 기관의 업무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낮아진다. 셋째, 국민의 언어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 기관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국어책임관이 필요한 것이다.

## 2.2.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임무

### 2.2.1. 국어책임관의 역할

- 관련 근거: 국어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 공공 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2.2.2. 국어책임관의 임무

#### 가. 쉽고 정확한 국어 사용 장려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의 장려
- 공문서 바로 쓰기
  - 참고 자료 보급 및 공무원 교육
- 쉬운 법령문 만들기
  - 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채용

- 행정 용어 순화(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 연계)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구성으로 발전 가능
- 나.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국어 관련 자체 교육
    - 전문가 초청 강연 유치 등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수강 지원
    - 연간 약 3,000명의 공무원이 수강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유치
    - 국립국어원이나 각 지역 국어문화원에 신청
- 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환경 개선 시책
  - 언어 경관 조성 사업
    -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달기, 유흥업소 등 상호 표기 순화 및 정비
  - 지역민 대상 한글 홍보 및 한글 단체 활동 지원 사업
  - 사업소, 기관 설치, 추진 사업에 우리말 상호와 명칭 사용하기
  - 한글날 기념행사, 우리말 사용 겨루기 대회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
  - 지역 언어 실태 조사 및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사업
- 라.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
  - 국어책임관 회의와 업무 협조
    - 국립국어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간의 회의와 업무 협조
    -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간의 회의와 업무 협조
  - 국어책임관 업무 관련 정보 교류, 국어 관련 전문 기관 및 인력 활용

### 2.2.3. 국어책임관 운영 성과

- 가. 국어책임관 지정
  - 국어책임관 제1차 지정(2007. 4. 25.)
    - 54개 중앙 행정 기관(부·차·청·위원회) 및 소속 기관(160개)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 중앙 행정 기관의 국어책임관 재지정(2008. 9.)
  - 정부 조직 개편(2008. 2. 29.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 법률 제88542호)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 기관의 국어책임관 재지정
-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이관에 따라 명단 재조사(2009. 10.)
  - 44개 중앙 행정 기관(부·처·청·위원회) 및 92개 소속 기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2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명단 파악

### 2.3.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국민들이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 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2.3.1. 전문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 개념과 범위
  - 개념: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
  - 범위
    - 전문 용어 순화(한자어, 외래어의 순화): 쉬운 말로 표준화
    - 전문 용어의 통일(표현과 의미의 일대일 대응): 의미의 표준화
    - 전문 용어의 자원 관리(ISO 체계):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 전문 용어의 산업적 활용(KS 규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 일반적 필요성
  - 소 통: 지식 전달 매개, 교육 기준, 국제 교류
  - 경제성: 균일성, 호환성, 능률성
  - 안전성: 오류 방지, 사고 방지
    - ※ 컴퓨터 용어 표준화(번역)의 사례 보기

원 문	Orientation	Landscape	Portrait	Save as...	Case-sensitive	Favorite
잘못된 번역	오리엔테이션	풍경화	초상화	...로 저장	경우에 민감한	마음에 드는
용어 표준화	(용지) 출력 방향	가로	세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소문자 구분	즐거찾기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국어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전문 용어 표준화의 단기적 성과 도출이 불가능하여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투자 감소
  -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담팀 해체
-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 기반 마련 필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4차 회의 대통령 보고(2009.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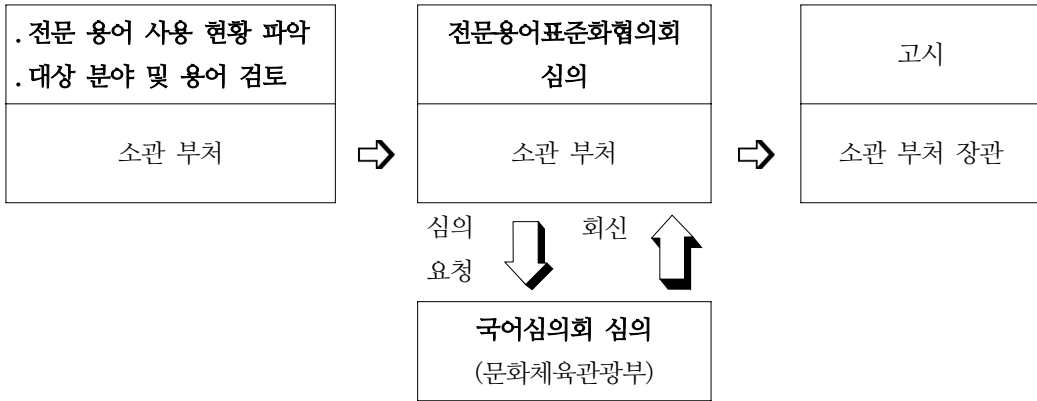
**보고 안전명: 한글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

1.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 어문 규범 및 전문 용어 정비, 한글 언어 자원(한글, 한자, 로마자, 외래어 등) 표준화·정보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외국과의 지식·정보 교류 증진 (전문 용어 표준화) 전문·학술 용어 표준화를 통해 우리말로 된 지식 체계 확립
- 범정부 전문 용어 표준화 계획 수립, 중앙 부처의 국어책임관을 통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활성화 유도
- 국제산업표준규격(ISO/TC 37)에 맞는 전문 용어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해 언어 정보 자원의 보편성 제고 및 국제화 유도

## 2.3.2. 현황과 과제

### □ 전문 용어 표준화 절차



※ 고시된 전문 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 □ 부처별 전문 용어 개선 현황

- 한국산업규격(KS) 용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산업 용어 약 12만 항목
  - 근거: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심의회 심의
  - 사례: 장래 용어 표준화(2004년) / 조문 → 문상, 부음 → 부고
-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 학술 용어 58개 학문 분야 / 수행: 학술단체총연합
- 기타
  -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용어 및 난해 용어 정비 방안(2007)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통상 용어 해설(2002)
  - 국토해양부: 지리 정보 용어 표준화(2002)

## 2.4.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운 말, 쉬운 말 쓰기 추진 계획(안)

### 2.4.1. 추진 배경

정부가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 외래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



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국격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고 언어문화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조사 결과(2009. 9.)
  - 우리말로 된 상품명에 친밀감이 간다(92%).
  - 우리말로 된 상품명 표기에 더 신뢰가 간다(82.8%).
  - 외국 문자를 한글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한다(73.9%).
  - 외국어로 된 상징 구호/정책 용어가 불편하다(28.1%).
- 한글날 경축사(국무총리, 2009. 10. 9.)
  -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공공 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부터 바로잡겠음.

※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 용어 사례들

현재 사용 중인 용어	의 미	대체 용어(안)
마이크로 크레딧	저신용, 저소득 계층 대상 소액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	서민 소액 신용 대출
데이케어센터	치매 노인·아동 등을 위탁 보호하는 주거 밀착형 시설	어르신·아동 돌봄터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책 읽어 주는 서비스	방문 동화책 읽어 주기

- 공공 기관의 외국어 남용을 우려하는 기사와 보도 증가
  -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를 ‘데이케어센터, 시프트’(한국경제, 10. 8.)
  - 정부 기관 외래어 남용, 해도 너무해!(문화일보, 10. 8.)
  - 정부·지자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경향신문, 10. 9.)
  - 정책 이름에 영어 범벅, 정부가 ‘한글 파괴’ 앞장(경향신문, 10. 9.)
  - Hi Seoul, K-water. 정부·지자체 상징말, 영어 사용 지나쳐(내일, 10.9.)
  - 한글 홀대하는 사회(MBC 뉴스데스크, 10. 9.)
  - 자랑스러운 세종대왕 옆에서 자랑하는 영어 간판들(조선일보, 10. 20.)
- 해외 사례: 쉬운 말로 행정 용어를 바꾸면 비용 절감 및 정부 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증가

- 2006년 미국 애리조나 국세청이 행정 서식을 알기 쉽게 변경
  - 문의 전화 감소 →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능 시간 증가 → 200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0,000건의 민원을 추가로 처리함.
- 2000년대 초반 미국 워싱턴 주 정부는 주 공무원 2,000명에게 쉬운 일 상용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육 실시
  - 세금 납부 고지서를 쉽게 수정: 목표보다 80만 달러 세금 수익 초과 달성

#### 2.4.2. 추진 현황

- 국어책임관 제도를 통한 중앙 행정 기관의 정책 용어 정비 추진
  - 2009년 중앙 행정 기관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2009. 8. 13.)
    - 내용: 부처별 정책 용어를 서민 밀착형으로 시범적으로 정비
    - 절차: 부처별로 정비 목록 작성 → 국립국어원과 협의 → 부처별 확정·시행
  - ※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제10조)
    -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보급
    -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등
    - 지정 현황: 중앙 부처 44개, 소속 기관 92개, 지자체 247개

#### [국어책임관 회의 후속 조치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11개 부처 참여, 개선 필요 정책 명칭 151개 목록 수집, 84개 항목에 대해 대체어로 교체하기로 함(2009. 10.).
- 부처별 정책 용어 자율 정비 결과 예시

부처명	정비 대상 용어	대체어	비고
교육과학기술부	위(Wee) 프로젝트	학교 안전 통합 시스템	2010년 변경 예정
국가보훈처	케어플랜	간호 복지 계획	
국토해양부	로드 킬	동물 교통사고	
문화체육관광부	유(U)-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2009년 10월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그린ICT	녹색 방송 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Escrow制)	결제 대금 예치제	

-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 관련 사업 추진 중
  - 공무원 누구나가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올바른 국어 사용 안내서 개발·보급(2009. 7. ~ 12.)
    - 내용: 공무원들이 잘 틀리는 사례와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심
  - 공공 기관 각종 서식과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안 마련(2009. 4. ~ 11.)
    - 대상: 중앙 행정 기관 39곳, 지자체 16곳의 생산 문서 서식 약 1,000종
-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공공 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개선
  - ‘한글 사랑 지원단’ 운영(한글학회 주관, 2009. 9. ~ 12.)
    - 50명의 국어 전문 인력을 4개월간 투입, 중앙 부처와 지자체 5백여 개 공공 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외래어·외국어 오·남용 등),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순화 용어 제시

### 2.4.3. 추진 실적 및 계획

쉬운 우리말 쓰기의 추진 방향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용어 정비를 통하여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문서, 보도 자료, 누리집 게재 자료 등에서 어려운 용어 사용을 자제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정부 및 지자체 ‘쉬운 우리말 쓰기’ 추진 체계 확립
  - 중앙 행정 기관의 정책 용어 정비 지속 추진
    - 정책 용어의 정비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 절차: 부처별로 정비 목록 작성 ⇒ 국립국어원과 협의 ⇒ 부처별 확정·시행
  - 부처별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용어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 국어책임관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안내서’ 제작·배포
    -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국민들이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구성·운영(국어기본법 제17조)

- ‘공공언어전문감수단’ 구성 및 운영
  - 공공 기관의 공문서 및 정책 자료에 대한 표현·표기 감수 지원을 위해 박사급의 국어 전문 감수단 구성(2010년 50여 명)
  - 교과서 표현·표기 감수단 지속적 운영(2008년~, 40여 명)
-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공공 언어의 지원 체계 구축
  - 각 시도와 국어문화원(대학 등 16개소)이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각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의 국어책임관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공공 언어 정책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2010년 4개 국어문화원 추가 지정 및 국어책임관 활동 관련 지자체 보조 사업 시범 실시
      - ※ 국어문화원: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국어기본법 제24조)
  - ‘한글 사랑 지원단’ 확대 운영
    - 2009년 50명(2009. 9.~12.), 기금(2억 7천만 원) → 2010년 상설 운영 전환 추진
    - 국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누리집 등의 언어 사용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권고
      - 공공 기관 누리집을 조사하여 올해의 쉬운 누리집 시상
      - 공공 기관 누리집에서 우리말 사용이 우수한 누리집에 인증 표시 부여
  -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한 공공 언어 개선(KBS 한국방송)
    - 외래어 순화 누리집인 말터 누리집(<http://www.malteo.net>) 지속적 운영
- 인터넷, TV 방송 등 언어 순화 적극적인 추진
  - 인터넷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우리말 쉽게 쓰기 사업 추진(2009. 11.)
  -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개선 방안” 개발(2009. 12.)
  -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으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및 공익광고 제작·방영(2010년)
  - 쉬운 우리말 쓰기, 텔레비전 및 전광판 공익 광고 제작 추진(2010년)
  - 신문 및 대중 잡지 등에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확산 기획 기사 게재

## □ 부처별 추진 과제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거친 말 사용 실태 조사 추진(2010)
  - 인터넷 댓글,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거친 말 사용 실태 조사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거친 말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집 발간·배포
- 고운 말 사용 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 개발(2010)
  - 거친 말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 방송인, 청소년 대상 맞춤형 고운 말 쓰기 강좌와 학습 내용 개발
  - 양성 평등 언어생활 지침 및 외국인 노동자 상대 화법 지침 발행
- 고운 말 사용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 운동 활성화 추진(2010)
  - 고운 말 쓰기 교양 프로그램 및 공익 광고 제작·방영
  -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고운 말 대토론회 개최
  - ‘고운말사랑지원단, 선플달기운동본부’ 등 고운 말 민간 운동 지원
- 대중 매체별 등급 심의 제도에 언어적 측면 반영 강화(2011)
  - 게임, 영화, 만화 등의 등급을 심의할 때 언어 유해 여부 적극 반영
  - 거친 말 사용 매체에 대한 접근 연령대 제한
- 고운 말 사용자에 대한 ‘언어문화 대상’ 시상식 개최(정례화)
  - 방송사, 인터넷 포털사, 시민 단체 등과 선정위원회 구성
  - 고운말 사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연예인, 누리꾼 등 선정·표창
- 국립국어원, 공공 기관의 알기 쉬운 정책 용어 만들기 지원(2010)
  - 공공 기관이 의뢰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새 용어 제안 및 확정하는 방식
  - 친서민 정책 관련 용어 등은 ‘말터’를 통해 누리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누리집’에서 새로운 정책 용어 접수 및 결과 홍보

### ○ 방송통신위원회

- 언어 청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실시(2011)
  - 언어 청정 프로그램 선정 위원회 구성(민·관 합동)
  - 프로그램 초기화면, 자막 등에 언어 청정 프로그램 인증 마크 부여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언어를 평가하는 ‘방송언어평가제’ 추진(2011)
  - 방송계, 학계 등과의 협조하에 객관적, 합리적 평가 지수 개발
  - 평가 후에 사후 조치 방안 마련 및 적용 제도화
- 고운 말 사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진행자 등 선정·표창(정례화)
- 거친 말 사용 프로그램, 제작자, 진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2010)
  - 경고, 제작·출연 제한, 방송 퇴출 등 단계적 제재 조치 현실화
- 교육과학기술부
  - 청소년 고운 말 지킴이 운동 전개(정례화)
    - 학교별 고운 말 지킴이 선정, 자율적인 고운 말 쓰기 운동 전개
    - 지킴이 활동 학생에 대한 봉사 점수 부여 등 유인책 실시
  - 고운 말 사용에 대한 표창 및 지원 추진(정례화)
    - 모범 교사·학생 표창 및 고운 말 사용 시범 학교 운영 지원
- 행정안전부
  - 고운 말 사용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표창(정례화)
  - 고운 말 사용을 선도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표창(정례화)
    - 지자체의 고운 말 사용 장려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
- 국방부
  - 고운 말 사용을 통한 상호 존중 병영 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2010)
    - 병영 내 언어 예절 안내서 개발 및 보급(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정훈 교육에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어 예절 강좌 개설  
(부대원 간 욕설 안기, 인격 모독 발언 안기 등)
  - 고운 말 사용에 대한 표창 및 지원 추진(정례화)
    - 고운 말 사용 장교, 부사관, 병사 및 모범 부대 표창
  - 거친 말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정례화)
    - 거친 말 사용 장교, 부사관, 병사에게 불이익 부여
- 노동부
  - 노사 간 상생·화합을 위한 고운 말 사용 운동 전개(2010)
    - 지시, 회의, 노사 협상 등 상황별 화법 개발 및 보급(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 가정의 언어 사용 개선 방문 교육 실시(2010 하반기)

- 다문화 가정 도우미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고운 말 교육

○ 경찰청

- 수사관의 거친 말 사용 개선 추진(2010)
  - 피조사자에 대한 고운 말 사용 지침 개발 및 보급(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수사 과정에서 거친 언어 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교육 지속 실시
- 고운 말 사용에 대한 표창 및 지원 추진(정례화)
  - 고운 말 사용 직원 및 모범 경찰서 표창
- 거친 말 사용에 대한 제제 조치 강화(정례화)
  - 거친 말 사용 직원에게 주의, 경고, 벌점, 감봉 등 단계적 제재

○ 법원, 검찰청

- 판사, 검사 등의 고압적이고 거친 말 사용 개선 추진(2010)
  - 피의자의 인격을 배려하는 고운 말 사용 지침 보급(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수사, 심문, 판결 등 상황별 거친 말 사용 개선 교육 지속 실시
- 고운 말 사용에 대한 표창 및 지원 추진(정례화)
  - 고운 말 사용 판사, 검사 및 모범 지원, 지칭 표창
- 거친 말 사용에 대한 제제 조치 강화(정례화)
  - 거친 말 사용 판·검사에게 인사 불이익 부여

□ 기대 효과

- 중앙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책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 공공 기관의 올바르고 쉬운 정책 용어 사용으로 친서민 정책의 확산 분위기를 도모함.

### 3. 맺음말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과 발전,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언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처럼 언어와 관련된 법이 있는 나라는 폴란드, 프랑스이다. 이 중에 프랑스어 보호 법은 강력하고 제재 사항이 많다. 반면 우리 국어기본법은 제재 사항이 거의 없다. 제정안 초안에는 제재 사항을 포함시켰으나 법 제정 당시에는 삭제하고 제정하였다. 이러다 보니 공공 기관에서 국어기본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 문서 작성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재 사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법을 숭선수범하여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공공 기관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유지하여 바로 쉬운 우리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언어 개선 사업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립국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어 전문가, 그리고 시민 단체가 힘을 모아 공공 언어 개선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은 공공 언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 공공 기관, 주목받는 정책 이름 정하기

김 상 료\_유나이티드브랜드 대표



# 공공 기관, 주목받는 정책 이름 정하기

김 상 루\_유나이티드브랜드 대표

## 1. 브랜드의 유래 및 정의

브랜드라는 단어는 노르웨이의 고어인 'BRANDR'로 “낙인을 찍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앵글로·색슨족이 불에 달군 인두로 자기 소유의 가축을 표시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던 것을 가리켰다고 한다.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 미국 듀크 대학의 켈러 교수는 브랜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고,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미국 마케팅 학회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란 ‘이름(NAME), 용어(Term), 기호(Sign), 상징(Symbol), 그리고 디자인(Design)의 조합으로서, 하나 또는 일련의 판매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자, 경쟁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는 한편으로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라는 말이다.

## 2. 브랜드의 역할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구매하기보다 브랜드 자체를 구입하는 브랜드 지향적 구매 행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제품 구입을 추가적으로 생각하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브랜드 지식에 근거해 제품을 판단하며 아울러 그 브랜드와 관련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따

른 탐색 비용을 줄여 준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제품을 구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의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귀중한 법적 재산, 즉 가장 큰 무형 자산이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구매 동기가 되고, 나아가 그 브랜드가 다른 제품으로 확장해 나올 경우에도 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받는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구전 홍보가 되어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주기도 한다. 예컨대 100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과 10명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후자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다.

### 3. 브랜드 이름이란?

브랜드 이름은 제품의 주요한 연상과 핵심 주제를 나타내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의 핵심 요소이다. 즉,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제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브랜드 이름이다.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제품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져서 시장에 내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획 및 발상을 잘해야 하며, 일단 개발된 것에 대해서도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Pulmuone**

‘풀무원’은 식품업계의 이름의 한 경향을 이끈 브랜드 이름이다. ‘풀무원’이 나온 이후, 식품 브랜드들은 ‘자연’과 ‘정성’의 의미를 담기 시작했으며, 세 글자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다. 예컨대 “청정원”, “해찬들”, “찬마루”, “산내들”, “양지뜰” 등등…….

#### 4. 브랜드 이름의 중요성

브랜드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브랜드 충성도(royalty)를 갖도록 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 타인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중요한 지식 재산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단 개발되면 불변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의 개발과 선정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충성도’란 습관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후 만족스러워 다시 사용하거나 맹목적으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무조건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해 브랜드 확장이 가능하며 충성도를 가진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구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소니’ 브랜드에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소니’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에 대해 구매할 확률이 높다. 또한 ‘소니’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니’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려고 상담할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추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고객에게 광고와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진다. 즉, 손을 안 대고도 코를 푸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100명의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10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적게 드는 반면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충성도를 얻게 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이름이다. 미국은 코카콜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코크맨”, 펩시콜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펩시맨”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름은 상표로 등록을 받음으로써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상표법이 더욱 강화되어 상표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을 획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이름일 경우 상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쌓아 왔던 브랜드 파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듯 이름은 법적 보호를 받아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5. 이름 정하기 과정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정해져야 한다. 회사 자체적으로 이름을 정해야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전문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관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회사 자체에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신제품의 속성과 외관상의 특성 등 신제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외관상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도출해 향후 이름 정하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름 정하기 전략 단계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이름 정하기와 관련해 회사의 전반적인 브랜드 체계 및 전략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기존 브랜드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그중 자사에 유리한 브랜드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전략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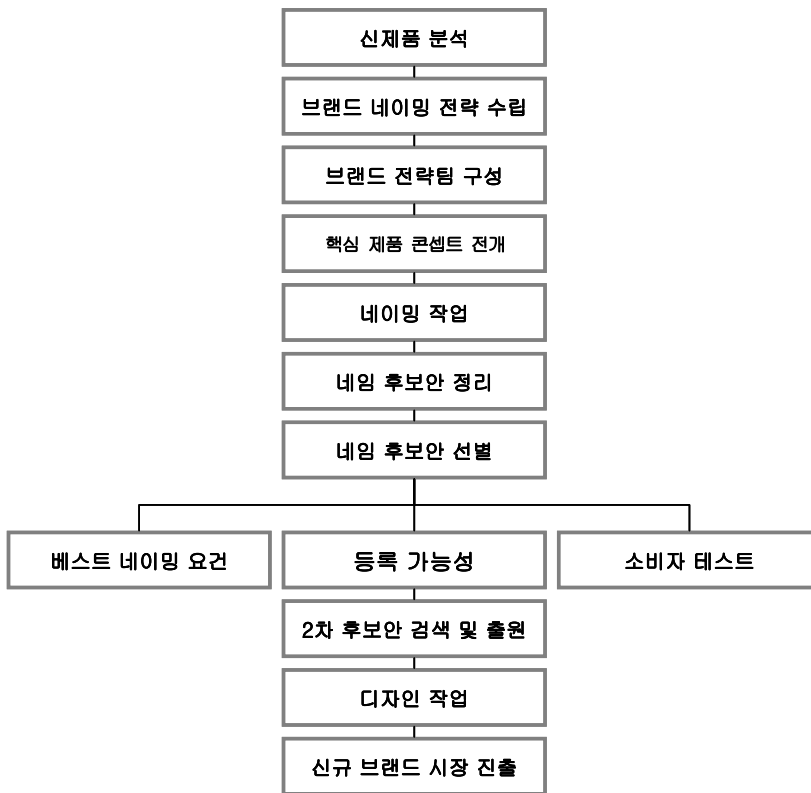
셋째, 브랜드 개발 관련 전략 부서가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전략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을 때는 브랜드 관리자가 책임자가 되어 이름 개발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TFT(Task Force Team)가 형성된다. 이 부서에는 제품 개발, 마케팅, 영업 부서 등의 인력이 총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신제품의 콘셉트와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한다. 전략 부서가 구성되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콘셉트를 설정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한다. 제품의 콘셉트는 해당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브랜드 콘셉트는 여러 가지 핵심 단어를 도출한 후 다른 경쟁 브랜드 콘셉트와의 대비를 통해 차별점을 찾아 콘셉트로 정한다. 이러한 콘셉트가 정해지면 이름 개발로 이어진다.

다섯째, 이름 정하기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쟁 브랜드의 이름 형태와 최근 브랜드 이름에 대한 경향도 분석하게 된다. 예컨대, 경쟁 브랜드가 쉬운 영어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활용해 개발할 수도 있고 기호형이나 숫자형 등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름 정하기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국가의 언어들에 대해 고민하고 경쟁사 대비 선도자와 후발자의 입장에 따른 이름

정하기 전략도 고려해야 하면, 아울러 기존에 설정된 브랜드 콘셉트하에서 이름 정하기에 관한 방향성을 설정한 후 이름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여섯째, 후보안을 정리해 선별한다. 여러 개의 후보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이름 정하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선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법률적 검토 즉,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해 변리사에게 의뢰한 후 상표 등록이 가능한 안들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조사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안들을 내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으로 최고 경영진이 선택한 안을 상표로 출원하고 디자인 작업 이후 신규 브랜드로 시장에 내놓는다.



<그림 1> 브랜드 네임 개발 과정(회사 자체)

## 5.1. 이름 정하기 기획 단계

### 5.1.1. 과제(프로젝트) 정의 및 목표 설정

과제(프로젝트) 정의에는 왜 이름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에서 왜 브랜드화가 필요한지, 기존 브랜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의 제시를 통해 정의를 도출한다. 이후 이름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즉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기존의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름이 그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든지 처음 나온 제품에 새로운 이름이 해당 목록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든지 이처럼 이름 개발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5.1.2. 시장 상황 분석(3C 분석)

#### 5.1.2.1. 시장 분석

시장이란 경제학상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제품의 가격이 형성되고 제품의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추상적인 기구를 말한다. 즉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되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는 제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사회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에 선행되어야 할 조사 항목들에는 구매자들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지, 또한 구매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고 구매 방법은 무엇인지, 가격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 항목들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시장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신규 브랜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세분화된 시장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 소비하는 소비자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시장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분석은 브랜드 전략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현재 관련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고객이 제공한 자료와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시장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연구소들과 관련 협회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일 경우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과 경향들을 조사하여 이에 관해 분석해야 한다.

### 5.1.2.2. 3C 분석

#### 5.1.2.2.1. 자사 분석(Company)

이름 정하기 전략을 수립하려면 우선 자사 분석을 해야 한다. 자사 브랜드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자사 제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자사만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자사 제품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이름으로 개발한다거나 자사의 핵심 경쟁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자사 브랜드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름 정하기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자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 자사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브랜드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브랜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아이덴티티(상징)를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를 위해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김치냉장고 “1124”는 기존 김장독 이름을 대체하는 브랜드로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지 않았고 “1124”를 김치냉장고로 인지하는 소비자들이 적었기에, 즉 인지도가 낮았기에 시장에서 사장되고 말았다. 다시 김장독 이름으로 회귀해야 했다.

만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인지율을 높여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네임 개발 시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해 비듬 방지 샴푸의 이름을 “노비드”로 할 것인가 “텐트롤”로 할 것인가는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 5.1.2.2.2. 소비자 분석(Consumer)

시장 세분화는 바로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소비자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소비자 분석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과 기업 경영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핵심 부분이다. 결국 소비자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 나아가 성공적인 기업 경영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이다.

소비자를 구분해보면 우선 구매 제안자, 구매 영향력 행사자, 구매 의사 결정자, 그리고 사용자(user)와 구매자(buyer)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구매 제안자는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처음으로 제안하는 사람으로 어린이가 과자를 사 달라고 조를 경우 바로 그 어린이가 제안자가 된다.
- 2) 구매 영향력 행사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건강 운동 기구의 경우 운동 선수, 스포츠 전문위원 등이 건강식품의 경우는 영양학 교수나 의사 등이 영향력 행사자가 된다.
- 3) 구매 의사 결정자는 최종적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구매 여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가격,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은 아이를 가진 주부가 구매 의사 결정자가 된다.
- 4) 구매자(buyer)는 실제로 재품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수준이 달라지면 구매자도 바뀔 수 있다.
- 5) 사용자(user)는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유아용 기저귀, 분유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자가 되고 주부는 구매자가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도 어떤 구매 결정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분석을 해야 한다. 즉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름 정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학습지 브랜드 이름 개발 시 사용자인 어린이들만을 고려하여 그들의 눈에만 맞는 이름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를 구매하는 부모들의 취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리고 기호에 따라 각각의 특성들을 분석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욕구(needs)를 잘 파악하여 이름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찾아내고 분석해야 하며 최근의 유행하는 언어는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유행하는 언어를 지나치게 쫓아 이름으로 개발할 경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름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해야 한다.

#### 5.1.2.2.3. 경쟁사 분석(Competitor)

3C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경쟁사 분석이다. 이 경쟁사 분석에서는 현재의 경쟁 상황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경쟁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며 경쟁사의 브랜드 이름에 대한 형태 및 경향 등을 분석한다. 즉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 경쟁 상황에서 어느 경쟁사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지, 또한 경쟁사의 브랜드는 몇 글자로 되어 있고 어느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유형의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경쟁사 브랜드 이름 개발 경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상황에서 선도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후발자의 입장인지를 분석함에 따라 이름 정하기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선도자의 입장일 경우 이름은 그 해당 목록을 대표할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개발해야 하고 후발자의 입장일 경우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독특하고 차별적인 이름을 개발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샴푸와 린스가 하나가 된 샴푸의 이름을 개발하는 데에 선도자의 입장이라면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름(하나로)을 개발해야 하고, 후발자의 입장이라면 경쟁자들이 모두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름들로 선점하고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며 차별화된 이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쟁사와의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 5.2. 브랜드 콘셉트

### 5.2.1. 콘셉트의 정의

‘콘셉트(Concept)’란 한 무리의 개개(個個)의 것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어 새로 만든 관념(觀念)을 말한다. 즉 ‘콘셉트’란 개념(概念)이나 정의(定義)로, 나는 누구인가?(who), 그것은 무엇인가?(what)를 나타내 주는 자아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말한다. 이를 브랜드 에센스(Brand Essence)라 표현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직적 혜택, 기업의 마케팅 전략상 차

별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이미지, 속성 등을 추출하여 핵심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개념이 잘못 선정되면 향후 전개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지며 잘못 추출된 브랜드의 개념은 브랜드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브랜드 이름 정하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다.

개념을 도출할 때는 우선 제품의 속성을 정의하고 경쟁 제품과의 강점을 파악한 후 소비자 혜택 요소를 추출해야 하며 그런 다음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 5.2.2. 개념 도출

브랜드 개념 도출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 표적 고객의 입장에서 차별화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미지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으로 브랜드 개념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호의적이고 독특하며 강력한 연상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의 브랜드가 표적 고객에게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표적 시장 내 경쟁 브랜드들 및 자사의 기존 브랜드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도 필요하다.

개념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특징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추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품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한 핵심 단어들을 추출한다. 세 번째로는 경쟁 브랜드 개념들과 차별화할 만한 핵심 단어들을 추출한다.

이상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을 합성하여 어구형으로 만들거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선정하여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

## 5.3. 브랜드 이름 표현 방법

### 5.3.1. 브랜드 이름과 언어적 이미지

어느 나라의 언어를 브랜드 이름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갖는 이미지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표 1> 언어의 이미지

영 어	→	기술력, 첨단 이미지, 서비스 우위
불 어	→	문화, 패션, 여성적, 섬세함
이태리어	→	패션, 디장인 지향, 여성적
독 일 어	→	남성적, 성능, 기술, 권위
스페인어	→	정열적, 강렬함, 화려함
러시아어	→	광대함, 문학, 음악, 신비감
인도어(힌디어)	→	신비감, 철학적

위의 표와 같이 영어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기술력과 첨단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영어는 어느 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언어이다. 불어는 패션과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태리어는 패션과 디자인 지향적이며 독일어는 남성적이며 기술과 권위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스페인어는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러시아어와 인도어는 신비적이며 철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영어의 어원인 라틴어는 최근 들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영어로 구성된 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틴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5.3.2. 브랜드 이름과 언어학/음성학

한글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따라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

<표 2>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ㅏ, ㅑ, ㅓ, ㅕ	對	ㅓ, ㅕ, ㅗ, ㅛ
밝다		어둡다
작다		크다
경쾌하다		무겁다
방긋		병긋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성 모음은 밝고 작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면 음성 모음은 어둡고 크고 무거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사각사각”이라는 이름의 경우, 의성어로 표현된 이름인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밝고 경쾌하다. 그러나 “서걱서걱”으로 표현할 경우 어둡고 무겁다. 이 둘을 비교할 때 제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모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영어로 된 이름을 한국어로 옮겨서 표현할 경우 제품이 어떤 이미지를 띠느냐에 따라 양성 모음을 활용할 것인지 음성 모음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표 3>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ㅂ, ㄸ, ㅍ, ㅌ, ㅍ, ㅌ	음성 기관의 근육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열이 일어나는 소리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		예) 언더웨어 - 레노마, 보디가드, 비비안 여성화장품 - 마몽드, 이지업, 라네즈
거센소리	ㅃ, ㄲ, ㅆ, ㅋ	기를 수반하는 터짐소리
된소리	ㅃ, ㄲ, ㅆ, ㅅ ㅈ	음성 기관의 근육 긴장을 수반하는 소리
힘과 강한 이미지		예) 생활세제 - 퍼펙트, 비트, 의약품 - 케펜텍, 케도툼

예사소리는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더웨어나 여성 화장품 등 패션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힘과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제나 의약품 등 제품의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 5.4. 브랜드 이름 후보안 선정 기준

브랜드 이름 후보안의 선정 기준은 여러 이름 정하기 전문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어야 한다.

브랜드 이름은 시각적, 음성적, 의미적으로 소비자들의 머리 속에 침투하여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브랜드 이름이 이 세 가지 요소 관점에서 독특하고 튀는 이름이라면 소비자들은 기억하기 쉬울 것이고 소비자들의 머리 속에 인지되고 저장된다면 구매 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갖게 함으로써 제품의 구매를 도와준다.

### 2) 제품군에 따라 제품의 속성을 적절하게 암시해 줄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브랜드 이름은 그 제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암시해 주도록 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등 생활 필수 제품군에서는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을 서술해 주거나 암시해 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과의 연관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풀무원”, “청정원”과 같이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제품의 특징, 즉 깨끗함, 청결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

### 3) 경쟁 브랜드 이름과 차별화되는 이름이어야 한다.

같은 제품군 내에서 경쟁사 브랜드 이름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이름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누구나 모방을 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결국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현존 브랜드에서 새로운 브랜드로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대우증권, 한화증권, 삼성증권 등 한자어로 된 그룹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증권 회사명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쌍용증권은 그룹명을 버리고 “굿모닝 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은 기존의 증권 회사 이름과는 매우 차별화된 이름이었다. 이 차별화된 이름으로 굿모닝은 기존 쌍용증권이었을 때보다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 예탁금이 많아져 증권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 4) 부정적인 연상이 없는 이름이어야 한다.

브랜드 이름의 청감이나 의미에 대해 지역적, 국가 간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특정지역, 특정 국가에서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브랜드 이름이 런칭 될 경우 그 곳에서의 브랜드 활동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브랜드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 연상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대형 냉장고 지펠의 경우 원래 “Gipfel”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출시하려 하였으나 “Gipfel”이라는 단어가 독일에서 속어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뜻이 있어 철자를 “zipel”로 변형하여 출시하였다. 이처럼 개발한 이름에 대한 부정 연상 점검을 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법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아무리 차별화되고 제품과의 연상 작용이 잘 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법적 등록을 받지 못하는 이름이라면 그 브랜드 이름에 대한 가치는 반감된다. 상표 등록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이점은 브랜드 이름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 주고 경쟁사의 모방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사 브랜드 이름에 대해 법적 등록을 받지 않아 많은 경쟁사들이 똑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한다면 자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 등록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홍편빵”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타인이 이를 법적으로 등록받아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권에 대한 돈을 요구하여 법원에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

브랜드 이름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법적 등록을 통한 타인으로부터의 남용을 방지하는 지적 재산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브랜드 이름 선정 기준에 대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브랜드 이름 선정 기준

브랜드 이름 다섯 가지 선정 기준	
Memorable	기억의 용이성
Transferable	암시성
Differentiate	차별성
Negative Exception	부정 연상 배제 (발음 및 의미)
Registrabl	법적 등록성

## 6. 공공 기관 브랜드 이름 정하기

### 6.1. 공공 기관 브랜드 이름 개발 방법

국가 공공 기관의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내 공모, 대국민 공모, 이름 개발 전문회사 의뢰 등이다. 사내 공모 및 대국민 공모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이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제시하는 이름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름 개발 전문회사에 의뢰할 경우 신뢰성은 보장이 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써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공모에 대한 심사 부분을 이름 개발 전문 회사에 의뢰함으로써 비용 절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6.2. 공공 기관 브랜드 이름 개발 시 우리말 활용에 대한 이점

국가 공공 기관의 정책 브랜드 이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바로 우리말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지자체 브랜드 이름을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말보다 영문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들의 타겟이 부득이하게 외국인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래어로 이름을 지어야 하지만 국내인들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경우 외래어가 아닌 우리말로도 충분히 전달력이 있으며 훌륭한 브랜

드 이름이 될 수 있다. “나라장터”, “새로마지” 등등 우리말로 지어진 이름의 경우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문으로 지을 경우 각 나라에 따라 발음과 의미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 6.3. 공공 기관 브랜드 이름 개발 사례(한국화훼농협 화훼 공동 브랜드)

2009년 4월부터 6월에 진행되었던 한국화훼농협 화훼 공동 브랜드 이름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이름 정하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례는 영문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과 우리말로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의 차이와 서로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한국화훼농협은 기존의 K-Flower(케이플라워)라는 이름으로 중국 및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었고 국내 꽃 판매 유통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화훼농협 내부에서는 소비자 지향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향후 꽃 판매점의 프랜차이즈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름의 변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이름의 변경을 통하여 대중적 화훼 전문 유통 브랜드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화훼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해외 화훼 시장의 특성과 국내 화훼 시장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외 시장의 특징으로는 세계 화훼시장의 꾸준한 성장으로 기존 주도국과 개발국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었고 고소득 경제인구의 증가로 화훼의 생산,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 간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국내 화훼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세미나 개최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사분석을 통해 한국화훼농협만의 강점 및 단점을 분석하였다. 해외 꽃 이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내 꽃 공동 브랜드 이름에 대해 살펴보니 지역의 이름과 결합된 설명적인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이로써 이름을 개발할 때 이들과 차별화된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사분석과 경쟁사 분석에 이어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꽃 공동 브랜드의 주요 고객은 바로 LOHAS(로하스,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족으로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 환경적인 소비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런 로하스족을 겨냥한 제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꽃 공동브랜드 이름도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이름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동 브랜드 이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즉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이름으로 어떤 단어를 활용하여 지어야 할지를 정하려면 먼저 공동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여야 하고 국내 공공 기관의 공동 브랜드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음으로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하여 이 브랜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화훼 농협, 대한민국, LOHAS(로하스), 꽃 등 세 가지의 키워드와 이미지를 고려하여 도출된 콘셉트는 “한국의 꽃 그 이상의 꽃”이었다. 이 브랜드 콘셉트 하에서 이름 개발에 관한 방향성에 따라 이름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언어로는 우리말, 한자, 영어 등이 있었으며 음절 수는 2~5음절이었다. 이름을 개발하는 데 기준으로 차별성(경쟁 브랜드 이름과 차별화되는 이름인가?)과 확장성(사업 영역의 확장에 대해 고려한 이름인가?), 대표성(관련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인가?), 발음 용이성(소비자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인가?), 기억 용이성(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가?) 등 5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향은 영문 “K”를 활용하여 꽃의 이미지와 합성한 이름을 개발하는 것과 두 번째 방향은 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 세 번째 방향은 농협의 이미지와 꽃의 이미지를 합성한 이름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방향에 어울리는 이름을 개발한 후 어떤 방향이 꽃 공동 브랜드 이름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 K를 활용할 경우 한국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었으나

단순 두문자로 구성되어 한국의 대표 꽃임을 얼마 만뎡 전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말 중 세련됨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꽃의 의미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결정된 이름은 ‘아리화(--花)’로 우리말 ‘아리’와 꽃을 뜻하는 ‘花’를 합성한 이름이 정해졌다. 이 이름은 영문으로의 표기도 가능하여 해외로의 수출에도 문제의 여지는 없었다.

이 이름 정하기를 통해 단순히 영문으로 이름을 개발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집필:** 〈가나다순〉

김상률(유나이티드브랜드 대표): 공공 기관, 주목받는 정책 이름 정하기

김한샘(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표준국어대사전 활용하기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정책 용어 쉽고 바르게 쓰기

김희진(국어생활연구원 원장, 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박종덕(국립국어원 강의교수): 어문규정

박창원(국어문화원연합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 수준 높은 공공 언어를 위하여

이정훈(서강대학교 교수): 공공 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어책임관 제도

국립국어원 2010-03-10

##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

---

2010년 3월 22일 인쇄

2009년 3월 22일 발행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